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Plan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for Public Building in Suwon

안국진

연구진

연구책임자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전무형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나윤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권준형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박정연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변혜영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8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8년 12월 31일
발행 2018년 12월 31일
ISBN 979-11-89160-18-0 (9354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안국진. 2018.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요약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인권은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활동하는 물리적 공간에서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활동 공간 중에서도 공공건축물은 가장 열려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며, 건물 이용자들의 인권이 보장받는 공간이어야 한다.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서는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 명시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인권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의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2018 수원시 인권공공건축물 기획단계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첫째,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UN, BSR, 한국인권재단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한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단계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인권공공청사의 이론적 논의와 국내 1호 인권청사인 성북구 안암동 인권청사 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공공건축물의 기획단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인권공공건축물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활용하였다.

인권청사 건립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하고자 인권취약지역인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건축기획 및 계획설계를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은 건물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도출하고, T/F팀과의 행정적 절차를 논의, 인권영향평가협의회의 검토, 주민 공청회를 개최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된 최종 계획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최종 계획안에는 설계개념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사업비 등 기본설계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련의 과정을 취합 및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하였고, 인권을 배려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설계공모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작성한 최종계획안, 가이드라인,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시범사업을 통해 인권공공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획단계 절차들을 분석할 수 있었으

며, 이를 토대로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기획단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①사업기본구상단계, ②사업계획수립단계, ③행정절차단계로 세분화하여 개발하였다.

①사업기본구상단계부터 건물이용자와 건축·인권전문가가 사업부서, 공사부서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는 건물이용자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가 계획안을 도출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최종 계획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회의과정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인권 배려 설계가 가능하도록 설계공모 지침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완성하고, 기획단계가 마무리되도록 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행정절차를 포함하여 개발하여 수행해야 하는 업무, 회의, 참여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③ 행정절차단계는 실제 공공청사 건립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편성, 공공건축 심의 및 용역발주 일상감사, 계약심의로 구성하였으며, 사업부서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정리하였다.

수원시민의 차별 없는 인권보장과 인권공공청사의 보급을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에 건물이용자와 건축·인권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건축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에서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건축·인권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건축기획 및 계획설계 업무의 대가기준을 책정하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주제어: 인권, 인권공공청사, 인권영향평가, 기획단계, 가이드라인

차 례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인권공공청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제1절 인권영향평가	7
1. 인권영향평가	7
2.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7
제2절 인권공공청사	10
1. 인권공공청사	10
2. 인권공공청사 사례	11
제3절 공공건축 기획단계	14
 제3장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시범사업 수행	 17
제1절 사업대상지 선정	17
제2절 추진과정	20
1. 방법	20
2. 추진절차	24
제3절 소결	47
 제4장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가이드라인	 51
제1절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가이드라인	51
1. 2018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	51
2.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가이드라인	54

제2절 사업기본구상	55
제3절 사업계획수립	56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56
2. 부지매입	56
3. 사업계획수립	56
제4절 행정절차	58
1. 투자심사	58
2. 공유재산관리계획	59
3. 예산편성	59
4. 공공건축 심의 및 용역발주 일상감사, 계약심의	59
제5장 결론	64
제1절 연구요약	64
제2절 정책제언	66
부록	69
계획설계안	69
설계공모 지침서	77

표 차 례

〈표 2-1〉 안암동 주민센터 건축현황	12
〈표 2-2〉 공공건축 기획단계 관련 선행연구	14
〈표 2-2〉 생태교통과 유사 개념의 차이점	15
〈표 3-1〉 사업 대상지 개요	19
〈표 3-2〉 지동 인권청사 신축을 위한 회의 일람표	24
〈표 3-3〉 설문조사 질문 및 답변(주민 1,179명 대상)	26
〈표 3-4〉 설문조사 질문 및 답변(청사 내 근무 중인 공직자 24명 대상)	27
〈표 3-5〉 지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들 대상 대면조사(1차 회의)	28
〈표 3-6〉 신축 예정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근무자들 요구사항	29
〈표 3-7〉 지동 주민들 대상 대면조사(2차 회의)	30
〈표 3-8〉 신축예정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주민들 요구사항	31
〈표 3-9〉 신축예정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주요 실과 면적	32
〈표 3-10〉 규모검토 Alt-01	33
〈표 3-11〉 규모검토 Alt-02	33
〈표 3-12〉 규모검토 Alt-03	34
〈표 3-13〉 규모검토 Alt-04	34
〈표 3-14〉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1차 T/F팀 회의(3차 회의)	35
〈표 3-15〉 계획안 1 (3+1) 면적	36
〈표 3-16〉 계획안 2 (2+2) 면적	37
〈표 3-17〉 2차 T/F팀 회의(4차 회의)	38
〈표 3-18〉 3차 T/F팀 회의(5차 회의)	39
〈표 3-19〉 인권영향평가(6차 회의)	40
〈표 3-20〉 인권영향평가 결과	40
〈표 3-21〉 최종 계획안 실별 면적	41
〈표 3-22〉 최종 계획안 개요	42
〈표 3-23〉 제1부시장 보고 회의(7차 회의)	43
〈표 3-24〉 주민공청회(8차 회의)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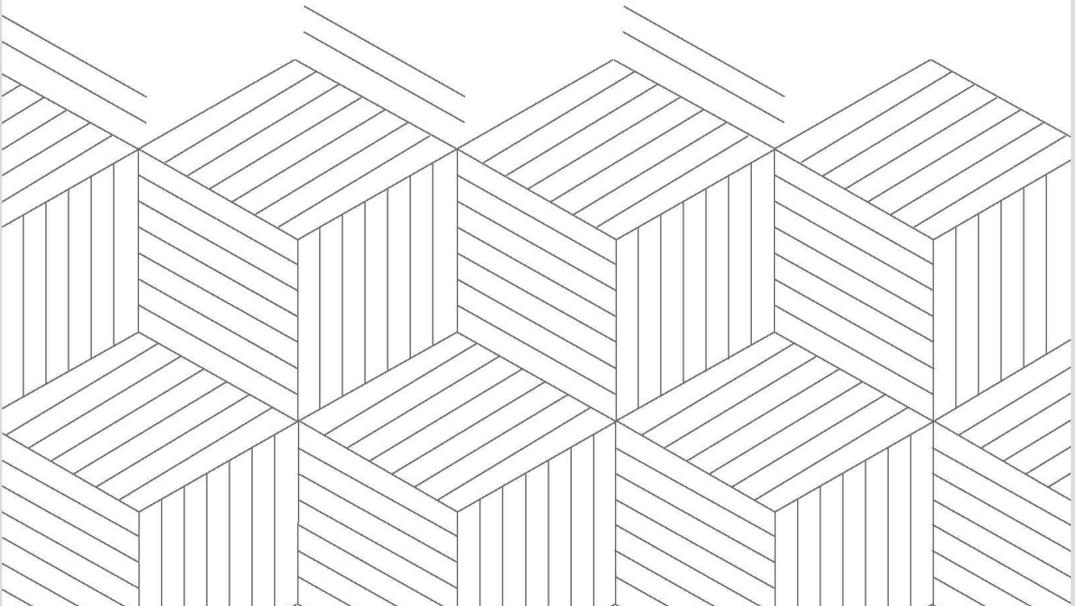
〈표 3-25〉 주민공청회 질의응답	44
〈표 3-26〉 설계공모 지침서 목차	45
〈표 3-27〉 설계공모 심사 평가 배점표	46
〈표 4-1〉 사업기본구상 단계 체크리스트	55
〈표 4-2〉 사업계획수립 단계 체크리스트	57
〈표 4-3〉 투자심사 절차	58
〈표 4-4〉 공공건축 심의 체크항목	60

그림 차례

〈그림 2-1〉 인권영향평가 7단계(UN, IFC)	8
〈그림 2-2〉 안암동 주민센터(신축)	11
〈그림 2-3〉 안암동 주민센터 추진 순서 내용	13
〈그림 3-1〉 지동 및 사업대상 부지	18
〈그림 3-2〉 단계별 사업대상지(신축부지 및 추가 매입부지)	18
〈그림 3-3〉 시범사업 수행 단계별 내용	21
〈그림 3-4〉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	22
〈그림 3-5〉 시범사업 수행 절차	23
〈그림 3-6〉 계획안 1 (3+1)	36
〈그림 3-7〉 계획안 2 (2+2)	37
〈그림 3-8〉 최종 계획안 조감도	41
〈그림 3-9〉 배치 및 동선계획	41
〈그림 4-1〉 2018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안)	52
〈그림 4-2〉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기획단계 가이드라인	52
〈그림 4-3〉 기획단계 가이드라인 구성	5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저마다 존엄성과 인권을 지니고 태어난다. UN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발표하였고, 이는 413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대부분 국가의 기본법에 활용되고 있다¹⁾. 이처럼 인권이란 인간사회에서 오랫동안 중요시 여겨오던 가치이며, 환경영향, 지속가능성, 삶의 질 등의 평가와 함께 평가지표로서 고려되고 있다. 국제 단체인 UN(United Nations),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등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권영향평가 평가지표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배포하였다. 국내 또한, 한국인권재단에서 기업인권영향평가 수행가이드를 개발하고(2016),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경영 표준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2017)를 수행하는 등 인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발해왔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2015년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민선7기의 목표 중 하나로 인권보호를 선언했다. 또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해 시정연구원을 통해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정책과 제도에 인권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영안, 2017)

그러나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정책적,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물리적 측면에서의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인권침해는 사회 속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물리적 공간에서도 일어난다. 특히, 최근 건립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위해 사회적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경제성만을 고려한 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어 빈번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누려야 하는 사회적 활동과 그 활동을 담은 건축물에서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의 중요성은 점차 대두될 것이며, 물리적 공간인 건축물에서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1) United Nations(2015),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p.3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공공건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해 공공건축 사업에서 수행 및 평가되어야 하는 항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실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 ①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건축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② 지동 행정복지센터가 인권공공청사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 참여하여 시범 사업으로 수행한다.
- ③ 시범사업을 토대로 “2018 수원시 인권공공건축 기획단계를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수원시 인권청사 보급의 저변확대뿐만 아니라, 국내의 인권건축 확산을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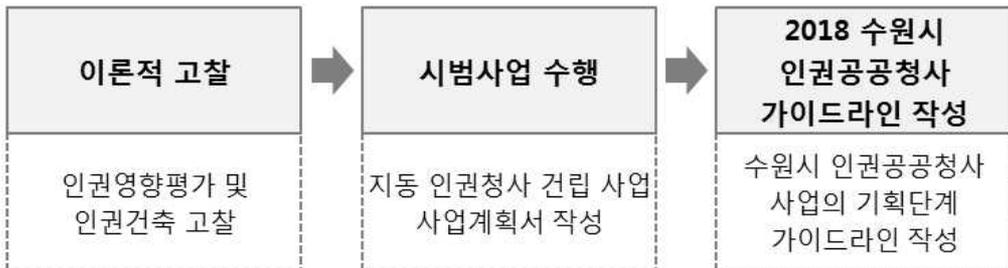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건축의 선행연구를 분석 ② 인권공공청사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으로 지동 행정복지센터를 선정하여 추진 ③ 시범사업을 토대로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기획단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다.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개념은 UN, BSR, 국제금융공사, 한국인권재단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다. 인권건축은 ‘2017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가이드라인’과 국내 제1호 인권청사인 성북구 안암동 주민센터를 참고하여, 인권건축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수원시 제1호 인권청사 실현을 위해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2014~)’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기획단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지동 인권공공청사 계획안과 설계공모 지침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로, 시범사업 수행을 통해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기획단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흐름은 그림 1-2와 같다. 시범사업대상 선정, T/F팀 구성, 설계발주에는 관(官)의 주도를 계획하였으며, 설문조사, 계획안 의견수렴에는 민·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1-2〉 연구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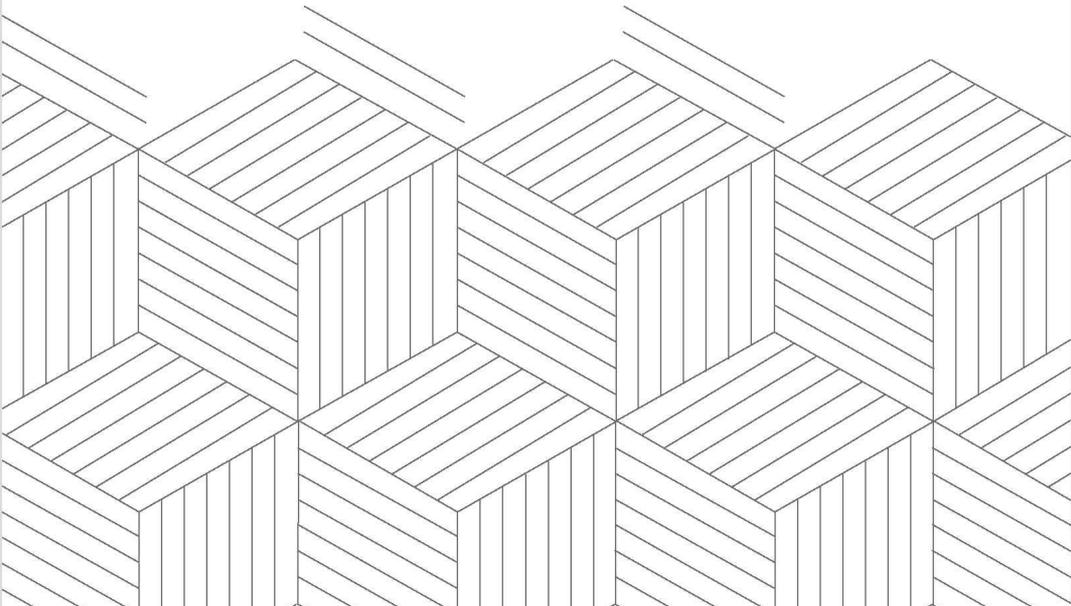


제2장 인권건축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인권영향평가

제2절 인권공공청사

제3절 공공건축 기획단계



제2장 인권건축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인권영향평가

인권에 대한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는 이영안(2017)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연구」에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다. 인권의 법률적 개념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항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1.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는 정책, 법률, 프로그램 그리고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The World Bank, 2013). 이영안(2017)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인권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이라 정의하였다²⁾. 그러나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일반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책, 법률 등의 사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활하는 물리적 공간에서도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영향평가란 정책, 법률, 사업 등의 사회적 영향요소와, 인권을 배려하는 시설과 건축물 등 물리적 영향요소가 개개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인권영향 평가라 정의할 수 있다.

2.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일찍부터 국제적 기업들은 인권영향평가(HRI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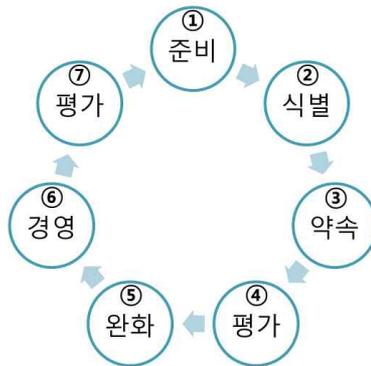
2) 이영안(2017),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pp17

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행해오고 있다.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에서는 기업들의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HRIAM, the Guide t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을 제시하였고,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국제연합과 국제금융공사는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BSR은 국제연합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1) 국제연합(UN) & 국제금융공사(IFC)³⁾

UN과 IFC에서는 인권영향평가에서 수행해야하는 단계를 ① 준비(Preparation), ② 식별(Identification), ③ 약속(Engagement), ④ 평가(Assessment), ⑤ 완화(Mitigation), ⑥ 경영(Management), ⑦ 평가(Evaluation) 총 7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2-1〉 인권영향평가 7단계(UN, IFC)



자료 : Désirée Abrahamas 외(2010), 'Guide t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HRIAM), UN Global Compact

- ① 준비 : 인권영향평가 범위를 설정하고 접근 방식을 결정한다.
- ② 식별 : 핵심적인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를 위한 베이스라인을 설정한다.
- ③ 참여 : 인권영향평가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인권위험 요소와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 인권 문제를 고려한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개발하기로 약속 한다.
- ④ 평가 : 인권 위험요소와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 ⑤ 완화 :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실무적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경영진에게 계획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안한다.
- ⑥ 경영 : 기업 관리자들은 경영시스템에 인권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된

3) Désirée Abrahamas and Yann Wyss(2010), Guide t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HRIAM),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수행계획과 개선 사항들을 개선한다.

- ⑦ 평가 : 추후, 기업의 인권고려 정도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 후 수정해야할 사항을 적절하게 조정한다.

추가적으로 IFC에서는 일련의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통해 기업의 인권적 역량 증진과 브랜드 가치 증대 등을 성취하고, 지속가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새로운 분야로의 기업 확장이나 타 기업으로의 금융투자 전에 타당성검토, 계획수립 등 초기단계에서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 BSR,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⁴⁾

BSR은 국제 비영리단체로, 창립 이래 지속적인 기업의 인권실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BSR이 수행하고 있는 인권실사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영향을 평가, 결과 수행, 수행 후 모니터링, 최종결과를 함께 논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기업체들은 미리 인권적 접근방식을 형성하고 관련 리스크와 기회들을 예측하여 예기치 못한 인권적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주요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업의 명예와 가치를 확인시키고 직원들의 참여와 동기부여를 일으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SR에서는 인권영향평가를 ① 정의(Customization), ② 통합(Integration), ③ 소유권(Ownership), ④ 초점(Focus), ⑤ 위험과 기회(Risks and opportunities), ⑥ 의미 있는 참여(Meaningful engagement), ⑦ 투명성(Transparency), ⑧ 전략적 제휴(Strategic alignment) 총 8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 ① 정의 : 기업의 정체성에 맞도록 인권영향평가를 정의하고,
- ② 통합 : 인권영향평가를 회사 체계에 통합하는 것은 회사 자원을 최적화 하고 업무 수행의 능률을 성장시키는 데에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③ 소유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인권적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독자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소유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며, 이때 인권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하고 있다.
- ④ 초점 :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일정을 수립한다.
- ⑤ 위험과 기회 : 인권문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잠재성을 파악한다.

4) Faris Natour and Jessica Davis Pluess(2013), Conducting an Effectiv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 ⑥ 의미 있는 참여 :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해 관계자들과 주주들에게 인권영향평가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참여를 유도한다.
- ⑦ 투명성 : 모든 관련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한다. 이 때, 포함되는 정보는 발견된 모든 인권적 이슈들뿐만 아니라 인권영향평가 방법과 분석된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
- ⑧ 전략적 제휴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기업은 정체성을 재수립할 수 있고, 신(新)분야로의 확장 시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3) 한국인권재단⁵⁾

1999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설립 된 비영리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인권재단에서는 2016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권영향평가 수행가이드를 ① 준비, ② 점검, ③ 착수, ④ 결과, ⑤ 모니터링 5단계로 제시 하였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기업이 인권에 미친 실질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특성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의 명성과 재정적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① 준비 : 평가대상을 인권 단독으로 할 것인지, 혹은 노무감사, 건강, 복지 등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범위를 정하고 평가의 이유와 목적을 설정 및 숙지한다.
- ② 점검 : 실제 평가 수행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단계로서 베이스라인, 범위, 스크리닝, 문제 규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 ③ 착수 : 규명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인권영향평가에 착수한다.
- ④ 결과 : 평가 결과를 통해 인권체계를 보완 및 구축한다.
- ⑤ 모니터링 : 구축된 체계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보고한다.

4) 수원시 인권조례

수원시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인권에 대한 정의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되어있다.⁶⁾

5) 한국인권재단(2016), 기업 인권영향평가 수행가이드

6)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집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인권센터 설치·운영)에서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둔다고 하였다. 인권센터의 업무로는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 연구 및 그 개선방안연구,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 홍보,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수원시 공공건축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도 인권센터에 의해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제2절 인권공공청사

1. 인권공공청사

건축물은 인간의 기본적, 사회적 활동을 담는 그릇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이 그릇을 활용함에 있어 불편해선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인권을 배려하여 계획·실현해야 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공공건축을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또는 규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출입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다수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⁷⁾ 따라서 공공건축은 건축물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의 인권을 배려하는 인권건축이 되어야 한다.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인권센터는 수원시의 공공건축물의 신축 시 ‘인권기본개념을 반영한 건립 기준설정’하고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시범사업(지동행정복지센터)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프로그램과 용도를 도출하고 최적의 기획설계안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설계안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에 관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한다. 지침서에 설계기준과 평가항목을 명기하고, 설계 공모안에 대해서는 공모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시범 실시한다. 향후 추진하는 인권청사 건립 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체계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7) 이규철 외(2016),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연구: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93

인권영향평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공건축물은 시민의 삶의 질,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권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사람이 우선인 인권공공청사로 거듭나야 한다. 인권공공청사를 통해 인권건축물의 보급의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인권공공청사 사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에는 ‘사람이 희망인 도시’를 지표로 삼아 건립한 인권청사가⁸⁾ 있다. 1977년에 건립된 안암동 주민센터는 2015년, 건물이용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인권공공청사로 신축되었다. 2012년03월, 안암동 인권청사 건립계획 사업 착수, 2012년 10월, 설계경기 공모, 2012년 11월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그 후, 5차례의 주민설명회, 2차례의 인권감리단 보고회, 1차례의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1차례의 인권감리단 및 관련부서 면담을 수행하고, 설계안을 도출, 시공 및 준공하였다. 사업 기간 동안 건립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이 외에도 건립추진위원회, 인권감리단, 설계자문위원회, 명예공사감독관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안암동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단체장 2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였다.

인권감리단은 한국인권재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인물들로, 건축전문가 4인과 인권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고, 인권청사를 위한 설계변경 및 시공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설계자문위원회는 건축계획(2인), 실내건축(1인), 건축구조(1인), 기계·전기·통신설비(2인), 인권위원(2인), 해당 동 구의원 및 자치위원 등(4인), 당연직(3인), 총 1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자의 전문분야 관련 자문을 하였다.

명예공사 감독관은 시공단계에서도 지역주민과 건물 이용자의 의견을 공사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안암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건설사 대표이사 총 2인으로 구성하였다.

8) 성북구청(2015), 안암동 인권청사 백서, 성북구청

〈그림 2-2〉 안암동 주민센터(신축)



자료 : 성북구청(2015) 「안암동 인권청사 백서, 성북구청

〈표 2-1〉 안암동 주민센터 건축현황

구분		내용	비고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2가 140, 140-4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철도(저축)	
대지면적		954.60㎡	
규모		지하1층, 지상6층	
건축면적		561.90㎡ (주민센터 291.00㎡ + 어린이집 270.90㎡)	
연 면 적	지상	2,007.07㎡ (주민센터 1,437.40㎡ + 어린이집 569.67㎡)	
	지하	271.57㎡ (주민센터 148.46㎡ + 어린이집 123.11㎡)	
	합계	2,278.64㎡ (지상연면적 2,007.07㎡ + 지하연면적 271.57㎡)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885.67㎡ (주민센터 1,344.92㎡ + 어린이집 540.75㎡)	지상주차장, 옥탑층 면적은 용적률과 주차대수 산정에서 제외
건폐율		58.86%	법정 60%
용적률		197.54%	법정 200% (최대 1,909.20㎡)
주차대수 산출용 면적		1,493.38㎡	지상층 주차장 제외한 면적
주차 대수	법정	7.47대	연면적 200㎡ 당 1대
	계획	7대	장애인주차 1대 포함
조경면적		법정면적: 954.6㎡ X 15% = 143.19㎡ 이상 (대지면적의 15%)	연면적 2,000㎡ 이상의 대지 대지면적(487.16㎡)의 15% 이상
		계획면적: 160.98㎡ (16.98%)	
총 별 용 도	지하1층	창고, 기계실	
	지상1층	주차장, 방공실, 주민커뮤니티센터, 아이돌봄방, 화장실	
	지상2층	민원실, 방재실, 통신실, 모빌렉실, 화장실	
	지상3층	동장실, 동대장실, 동대본부, 문고(인권도서관), 화장실	
	지상4층	문화센터, 강의실(다목적실), 상담실(회의실), 화장실	
	지상5층	힐링센터(헬스장), 샤워실(파우더, 사우나), 화장실	
지상6층		강당, 창고, 조리실, 휴게데크, 화장실	
승강기		승용 승강기: 1대(15인승)	장애인 겸용
정화조 용량		220인용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설계		(주)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성북구인권감리단	
소요예산		5,489백만원	

자료 : 성북구청(2015) '안암동 인권청사 백서, 성북구청

안암동 인권청사 건립 사업에서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이후 「건립추진위원회, 인권감리단, 설계자문위원회, 명예공사감독관」 4개의 단체가 활발히 의견을 교류하였으며, 최종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부터 준공까지 참여하였다. 협의를 추진한 순서와 내용은 그림 2-3과 같다. 최종 설계안 도출을 위해 10개월 동안 각종 회의를 진행하며 매회 설계안을 보완하였다. 안암동 인권청사는 건물 이용자가 설계안 도출에 참여하였다는 점과 건축가들과 함께 활발한 의견교류를 수행하여 최종 계획안을 도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당선작 선정되기 이전인 건축 기획단계 과정에서 건물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에 그 한계점이 있다.

〈그림 2-3〉 안암동 주민센터 추진 순서 및 내용

기획단계	설계경기 지침서 작성(인권영향평가 업체 용역)
	설계경기 공모 및 당선작 선정
	당선작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설계안 도출	제1차 주민설명회(1차 설계안 보완)
	제2차 주민설명회(2차 설계안 보완)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개최 (3차 설계안 보완)
	제3차 주민설명회(3차 설계안 설명)
	인권재단과 구청 관계자 면담(공간변경 협의)
	인권감리단 1차 보고회 개최(4차 설계안 설명)
	인권감리단 2차 보고회 개최(5차 설계안 설명)
	제4차 주민설명회(5차 설계안 설명)
기본 및 실시설계 / 준공	공사발주
	기공식
	제5차 주민설명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가구 선정)

제3절 공공건축 기획단계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기획단계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공공건축 기획단계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공공건축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한 행정절차가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표 2-2와 같다. 그러나 인권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기획단계 가이드라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표 2-2〉 공공건축 기획단계 관련 선행연구

저자(연도)	제목	내용	본 연구와 연관성
이규철 외 (2016)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⁹⁾	공공건축에 대해 정의함. 예산편성, 투자심사 등 공공건축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음.	기획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행정절차에 대한 분석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개선방안 ¹⁰⁾	공공건축 기획단계에서의 사전검토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함. 사전검토 신청 사업 기획단계 사례 분석(14~16') 공공건축 기획 단계에서 공공성 고려하는 방법을 제안	14'~16'공공건축 사업 추진절차 사례 분석 공공건축 기획단계의 문제점 지적
김혜련 (2018)	지역재생 관점의 공공건축 기획·운영시스템 ¹¹⁾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기획·운영 시스템 분석 지역재생을 거점으로 한 2016년 공공건축의 기획·운영시스템 사례분석	공공건축 기획단계 분석

인권공공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기획단계가 매우 중요하며, 이와 유사한 연구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개선방안”이다. 공공건축의 공공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사전검토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 건축기획 초기에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공무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4.2%가 기본구상 단계에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의 문제점을 일찍 발견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내용 결정, 예산편성, 부지선정 등의 중요한 항목들이 기획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공공청사 건립에는 사업을 시작하는 기획단계에서 건물 이용자와 관련 부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절차상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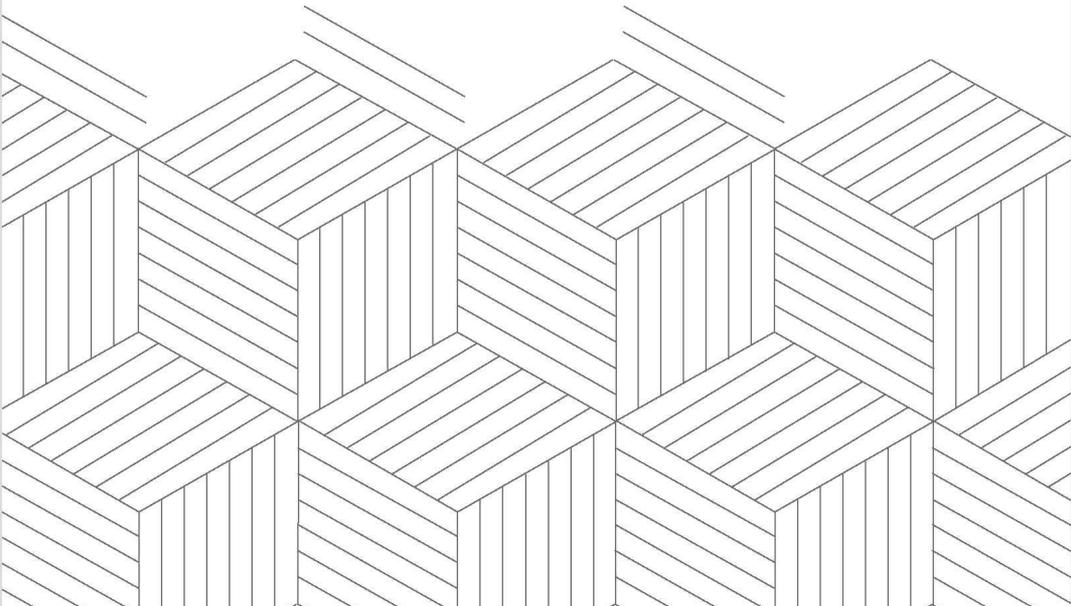
9) 이규철 외(2016),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0)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개선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1) 김혜련(2018), 지역재생 관점의 공공건축 기획·운영시스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제3장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시범사업 수행

제1절 사업대상지 선정
제2절 추진과정



제3장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시범사업 수행

제1절 사업대상지 선정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건물과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대상건물로는 일상 도시생활에서의 가장 작은 행정단위의 공공건물로 「동사무소」를 지목하였다.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3가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 ① 노후화 정도 : 건물이 노후하여 신축이나 증개축의 건축행위가 필요한 곳,
- ② 인권취약지역 : 인권이 취약한 지역이라고 인식되는 곳,
- ③ 실행가능성 : 현실적으로 사업진행이 바로 가능한 곳.

몇 곳의 후보 중에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동」을 지목하였다.

수원시 지동은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생겨났다. 1972년, 우만동과 통폐합되어 지만동이 되었다. 그 후, 1990년 1월 1일, 시 조례 제1607호에 따라 우만동과 분동되었으며, 1993년, 팔달구의 설치로 팔달구 지동이 되었다. 현재 지동은 약 0.79㎢의 면적에 약 7,450세대와 16,7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36개의 통으로 구성되어 있다.(지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2018.10.05.)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방위협의회 등 10개의 주민단체가 있으며, 주민자치적 성격이 강한 행정구역이다.

① 노후화 정도 : 지동행정복지센터는 1989년 11월 11일에 건립되었는데, 늘어가는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주민들과 청사근무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민자치가 잘되어 있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김장행사, 반찬봉사, 경로회 등 마을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는데,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② 인권취약지역 : 수원 도시재생전략계획 보고서(2018)¹²⁾에 따르면, 지동의 인구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령 인구비율이 약 18%로, 수원

12) 수원시(2018),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p.30-49

시 43개 행정지역 가운데에서 6번째로 높다. 노후건축물 비율은 82.88%로 수원시에서 4번째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행정지역에 속한다. 그만큼 지동은 노후되고 낙후된 곳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2012년 4월에 벌어진 “오원춘 토막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취약한 우범지역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지역 이미지 쇄신을 위해 안전마을 만들기, 골목길 재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했다.

③ 실행가능성 : 수원시는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39번길 일원, 8필지)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부지확보와 설계공모를 내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어느정도 마무리 해 놓은 상황이었다.

앞서 3가지 인권청사 선정기준에 의해, 수원시 인권센터는 시민정부를 표방한 수원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될 지동 행정복지센터를 수원시 제1호 인권공공청사 건립사업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3-1〉 지동 및 신축사업대상 부지



〈그림 3-2〉 단계별 사업대상지(신축부지 및 추가 매입부지)



그림 3-2에는 1단계, 2단계 사업대상지가 표시되어 있다.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대상지는 본래 그림3-2에 표기된 1단계 사업영역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39번 길 일원의 8필지)이었다.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 요구에 의해 필요공간이 늘어나면서 7필지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단계 사업대상지는 추가 매입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기존 사업부지(1,457.00㎡) 1단계사업과 추가매입 부지(1,357.00㎡) 2단계사업, 총 면적 2,814㎡(이면도로 소로2류 포함)의 부지를 최종 사업대상지로 결정하였다.

〈표 3-1〉 사업 대상지 개요

구분	내용
대지위치	기존 사업부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146일원 8필지 (143-1, 146-48, 146-49, 146-23, 146-21, 142-28, 142-29)
	추가 매입부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146일원 7필지 + 소로2류 (이면도로 포함) (146-38, 146-39, 146-40, 146-41, 146-42, 146-43, 146-51)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내부4구역 (건물높이 제한 : 평지붕 14m, 경사18m 이하)
대지면적	기존 사업부지 : 1,457.00㎡
	추가 매입부지 : 1,357.00㎡(이면도로, 소로2류 포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조경면적	15% 이상

제2절 추진과정

1. 방법

수원시정연구원은 2017년,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이영안, 2017). 2017 가이드라인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 및 유지관리까지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였으나, 단계별 구체적 실천사항의 내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권공공청사(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추진은 그림 3-4,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이영안, 2017)'를 토대로, 실제 건축기획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시행절차로 정리하였다.¹³⁾

선행연구 중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은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초기 준비단계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만 성공적인 인권배려로 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로,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구체적 사항을 초기에 잘 수립해야만, 발생하는 문제에 사전 대처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사업완수

13) 이영안(2017)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로 이어진다고 명시하였다.¹⁴⁾

본 연구에서는 설계용역 전 단계인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과 건물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하여 건물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은 6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고, 그림 3-3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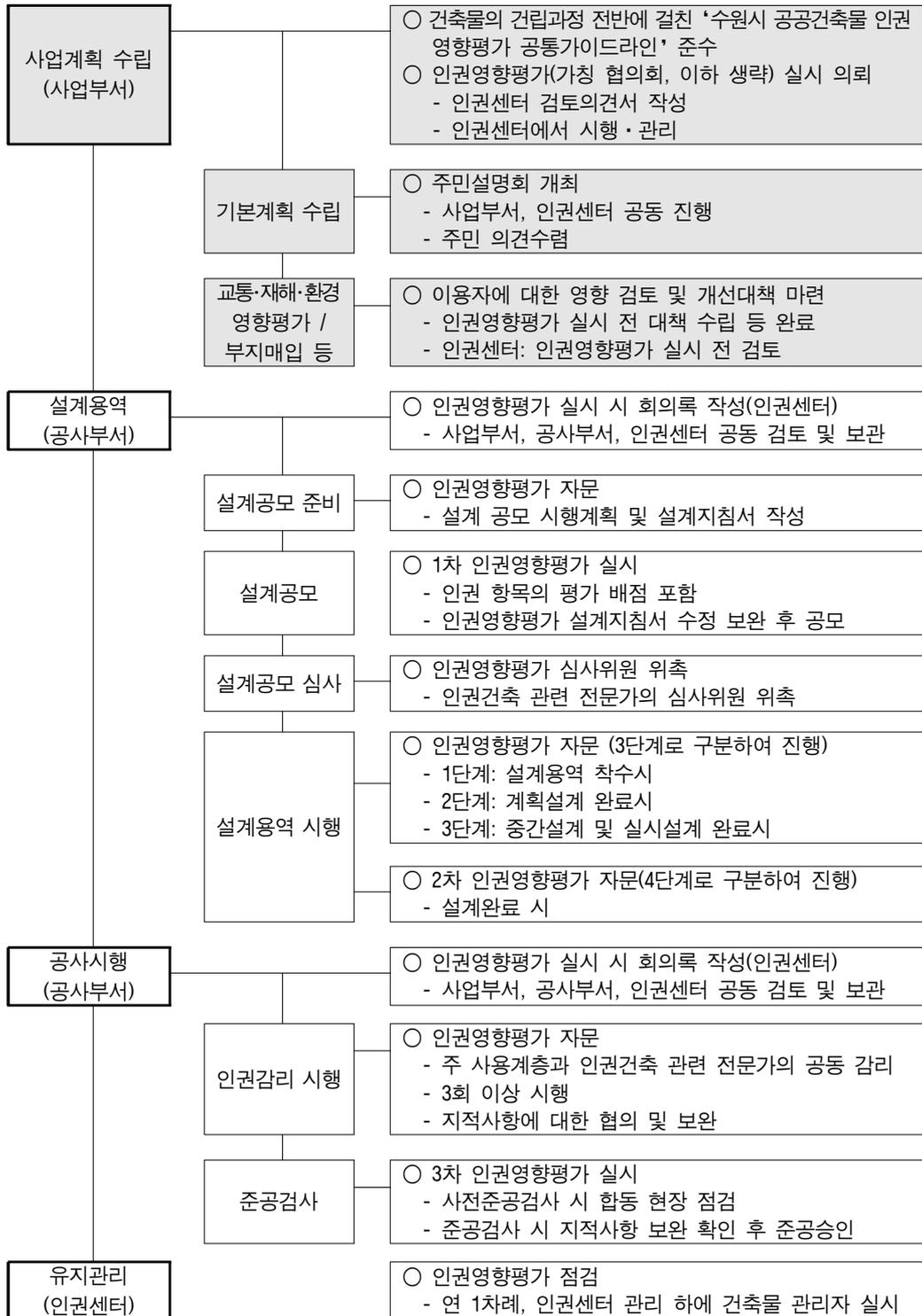
- ① 1단계(방향설정) : 사업부서, 공사부서, 인권센터, 건축전문가(수원시정연구원), 관련부서로 구성된 T/F팀을 조직하여, 사업추진에 대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 ② 2단계(의견수렴) : 건물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 지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분석 후에는 신축 건물의 주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대면 조사에는 건축물 내·외부 요구공간, 면적, 형태 그리고 디자인 컨셉 등 건축 전반적인 의견을 경청한다. 의견수렴 후, 1차 계획안과 설계공모 지침서를 작성한다.
- ③ 3단계(계획안 도출) : 작성한 계획안과 설계공모 지침서에 대해 건물이용자와 T/F팀과 논의하여 피드백을 실시한다. 2차 계획안과 설계공모 지침서를 작성한다. 작성한 계획안에 대해 다시 피드백을 실시한다.
- ④ 4단계(인권영향평가) : 최종계획안과 설계공모 지침서, 수행절차에 대해 인권영향평가협의회가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한다.
- ⑤ 5단계(공청회) : 최종계획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종결과물(최종계획안, 설계공모 지침서)은 T/F팀에 공유한다.
- ⑥ 6단계(최종보고) : 공청회를 통해 사업부서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수립 결재를 득한 후 설계공모한다. 이로써 본 시범사업은 마무리된다.

14) 임유경 외(201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개선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그림 3-3〉 시범사업 수행 단계별 내용



〈그림 3-4〉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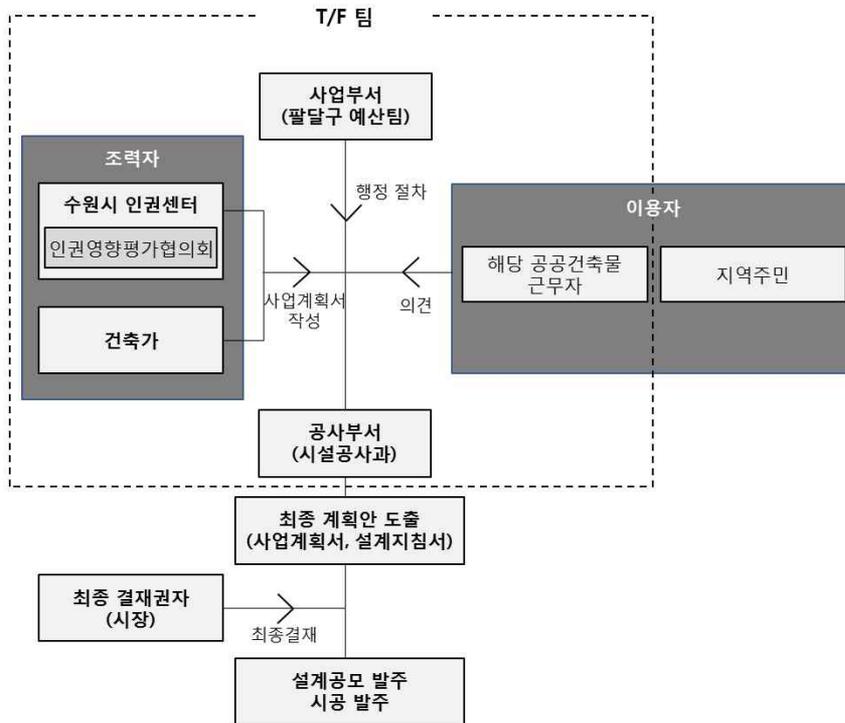
자료 : 이영안(2017)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그림 3-5는 시범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관계자들의 조직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T/F팀은 수원시 관련부서와 건축전문가로 구성되며, 역할에 따라, 조력자, 이용자, 사업부서, 공사부서로 구분한다.

“조력자”는 수원시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협의회”, 건축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인권건축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건축전문가”는 건축기획 및 설계자로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지동 행정복지센터를 설계하는 업무와 설계공모 지침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내 ‘수원공공디자인센터’가 맡았다.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협의회”는 사업 수행 중에 인권적 측면을 검토하는 역할이다. 인권영향평가협의회는 건축전문가 2인, 수원시 인권위원회 2인, 수원시 인권센터 1인, 수원시 도시디자인팀 1인, ‘수원공공디자인센터’ 1인, 총 7인으로 구성하여, 인권적 관점, 건축적 관점, 도시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본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자”는 신축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과 해당 센터 근무자로 구성된다. 지역주민은 지동 통장, 단체장, 일반 주민들로 구성되며, 근무자는 행정민원 공직자, 환경관리위원회, 보안관, 중대본부로 구성된다.

〈그림 3-5〉 시범사업 조직 구성도



2. 추진절차

앞서 설정한 추진방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개최된 회의는 총 9차례이며, 표 3-2에 개략적인 회의내용을 일람표로 작성하였다. 모든 회의에는 “조력자”인 건축전문가(수원시 정연구원)와 수원시 인권센터가 참여하였다.

- 0회차 회의 : 본격적인 회의 수행 전에 T/F팀을 구성하고 전반적인 일정을 계획하였다.
- 1회차 회의 : 대면조사를 통해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2회차 회의 : 대면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계획안을 도출하였다.
- 3회차 회의 : 1차 계획안에 대해 피드백을 실시, T/F팀과 추가매입 부지를 논의하였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계획안을 도출하고, 설계공모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 4회차 회의 : 추가매입 부지를 고려한 2차 계획안과 설계공모 지침서에 대해 T/F팀과 논의하였다.
- 5회차 회의 : 추가매입 부지 결정을 위해 T/F팀과 논의하였다.
- 6회차 회의 : 추가매입 부지 결정을 위해 계획안과 설계공모 지침서 대해 인권영향평가

를 실시하였다.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매입 부지를 고려한 최종계획안을 도출하였다.

- 7회차 회의 : T/F팀과 결정사항을 논의하였다.
- 8회차 회의 : 수원시 각 장들(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팔달구청장 등)에게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9회차 회의 : 도출된 최종계획안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표3-2에서 알 수 있듯, 계획했던 단계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시범사업 수행 중, 주민요구에 의해 사업대상지가 추가·변경 되었고, 그 과정에서 T/F팀 회의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5단계인 주민공청회는 자연재해(태풍)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어 가장 마지막에 추진되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일로 일정이 변경되었으나, T/F팀, 주민과의 회의를 생략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목적(최종계획안 도출)을 달성하였다.

〈표 3-2〉 지동 인권청사 신축을 위한 회의 일람표

회차	단계	회의 일자	회의명	참여자	주요내용
0	1	~ 07.12	T/F팀 사전회의	· 수원시청(인권센터) · 수원시정연구원	· 본격 사업 수행에 앞서 일정 및 절차에 대해 논의
1	2	07.12	공직자 의견수렴	· 수원시청(인권센터) · 수원시정연구원 · 지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	· 답사 후 지동 행정복지센터 현황 파악 · 지동 소속 직원들(동장, 공직자, 환경관리위원)로부터 신축 예정 행정복지센터의 개선사항 및 요구사항 수렴
2	2	07.19	주민 의견수렴	· 수원시청(인권센터) · 수원시정연구원 · 지동 각 단체장 및 주민	· 지동 주민들로부터 신축 예정 행정복지센터의 개선사항 및 요구사항 수렴
3	3	07.24	1차 대안 평가	· 팔달구청(예산팀), 인권센터, · 수원시정연구원 · 지동 통장31명	· 지동 인권청사 1차 계획안 설명 (수원시정연구원) · 추가매입 부지 고려를 제안 (수원시정연구원⇨팔달구청)
4	3	08.20	T/F팀 회의 1	· 수원시청(도시디자인팀, 시설공사과, 인권센터, 팔달구 예산팀) · 지동 행정복지센터 · 수원시정연구원	· 설계공모 지침서, 지동 인권청사 2차 계획안 설명(수원시정연구원) · 설계공모 지침서에 대한 피드백 · 2차 계획안에 대한 피드백
5	3	08.23	T/F팀 회의 2	· 수원시청(도시디자인팀, 시설공사과, 인권센터) · 지동 행정복지센터 · 수원시정연구원	· 지동 인권청사 계획안 1,2 설명(수원시정연구원) · 계획안 1,2에 대해 논의 · 계획안 별 행정절차상의 논의

회차	단계	회의 일자	회의명	참여자	주요내용
6	4	08.27	1차 자문회의	· 인권영향평가위원단 · 수원시청(도시디자인팀, 인권센터) · 수원시정연구원	· 계획안 1,2 논의 · 설계공모지침서 내 인권적 내용 논의
7	3	10.16	추진상황 점검회의	· 수원시청(도시디자인팀, 인권센터, 팔달구 예산팀) · 수원시정연구원	· 제1부시장 추진상황보고회에 앞서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 · 계획안 검토 및 설계공모지침서 명시 사항 논의
8	6	10.18	추진상황 보고회	· 수원시청 각 장들(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도시관리과장, 도시디자인팀장, 시설공사와과장, 팔달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예산팀장, 지동 동장, 인권센터) · 수원시정연구원 · 지동 행정복지센터	· 지동 인권청사 건립의의, 목적 설명 · 추진현황 보고 및 지동 행정복지센터 계획안 설명 · 계획안과 부서 간 행정적 협의 약속 및 확정
9	5	11.20	주민 공청회	· 수원시청(인권센터, 팔달구 예산팀) · 수원시정연구원 · 지동 주민(통장 및 각 단체장) · 지동 행정복지센터(공직자, 문화프로그램 강사)	· 지동 인권청사 의의, 계획안 설명 · 행정 및 계획안에 대해 질의응답 · 주민의견 반영하여 계획안 피드백

1) 설문조사

인권센터에서는 2018.06.18.~2018.07.13.동안 건물이용자인 지동 행정복지센터 공직자(24명)와 주민들(1,179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지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된 문항들로 이뤄졌으며, 표 3-3, 3-4에 문항과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답변을 정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행정업무 못지않게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었다. 행정복지센터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었으며, 주차공간과 주민편의공간에 가장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쉼터와 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가장 바라고 있었다. 또한 지동 마을 행사에 필요한 사랑방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쉼터 공간도 바라고 있었다.

〈표 3-3〉 설문조사 질문 및 답변(주민 1,179명 대상)

구분	질문	다수 선택 답변	비율(%)
1	주 방문 목적	행정업무 처리(주민등록, 사회복지 등)	48.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38.7%
2	행정부지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사람	혼자	79.6%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10.1%
3	행정부지센터 방문시간대	오전(09:00~12:00)	55.0%
		오후(12:00~18:00)	26.0%
4	행정부지센터 방문 체류시간	30분 이내	36.0%
		3시간 이내	35.9%
5	행정부지센터 시설에 대한 만족도 (1점(만족)~5점(불만족)의 5점 척도)	3점(보통)	58.6%
		2점(조금만족)	13.0%
6	행정부지센터 이용 시 만족했던 공간	주민자치센터 공간	42.2%
		행정업무 공간	28.8%
7	행정부지센터 이용 시 불만족 공간	주차공간	59.5%
		주민편의공간	43.3%
8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주민편의시설(쉼터, 체육시설 등)	60.9%
		업무이용의 편의성(공간배치, 독립된 상담실 등)	12.6%
9	신축예정 지동행정부지센터 설치희망 시설	다용도 체육시설(헬스장 등 운동시설)	56.4%
		주민쉼터 공간(사랑방)	39.2%
10	행정부지센터 이용을 원하는 시간대	오전(09:00~12:00)	43.9%
		저녁(18:00~21:00)	26.4%
11	1주일에 내 이용 횟수	3~4회	53.9%
		1~2회	29.3%
12	지불비용	1만원	42.4%
		3만원	34.3%

현재 지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 중인 공직자들의 77.5%가 행정복지센터에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주차공간과 행정업무 공간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직원 개인의 업무 공간이 협소한 것과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복지 업무로 추가인력이 필요한데 비해 추가인력의 업무공간이 없는 점을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장 필요한 공간은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주민쉼터 공간, 문화공간, 다용도 체육시설이라고 꼽았으나, 체육시설의 경우 운영상 문제가 가장 큰 시설로 뽑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인력부족과 근무시간 외에 개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라고 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건물이용자들은 주차공간을 불만족스러운 공간이라고 답하였으며, 주민쉼터 공간과 다용도 체육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행정업무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표 3-4〉 설문조사 질문 및 답변(청사 내 근무 중인 공직자 24명 대상)

구분	질문	다수 선택 답변	비율(%)
1	주로 처리하는 업무	일반 행정업무	58.3%
		주민등록	12.5%
2	행정복지센터 시설에 대한 만족도 (1점(만족)~5점(불만족)의 5점 척도)	4점(조금 불만족)	50.0%
		5점(불만족)	37.5%
3	행정복지센터 근무 시 만족했던 공간	기타	41.7%
		주민자치센터 공간, 행정업무 공간	16.7%
4	행정복지센터 근무 시 불만족했던 공간	주차공간	66.7%
		행정업무 공간	62.5%
5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	행정업무 공간 협소	50.0%
		대중교통, 위치 등 접근 불편	20.8%
6	행정복지센터 시설을 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시설 유지 보수	37.5%
		주차장 관리	25.0%
7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업무이용의 편의성 (공간배치, 독립된 상담실 등)	87.5%
		시설이용의 안전성 (바닥 마감재, 보행 장애물, 미끄럼 방지 등)	8.3%
8	신축예정 지동행정복지센터 설치희망 시설	주민쉼터 공간(사랑방)	50.0%
		소통과 문화 공간(갤러리, 북카페 등)	
		다용도 체육시설(헬스장 등 운동시설)	29.2%
9	운영상 문제점 큰 시설	유아시설(장난감 도서관, 놀이방, 유아 교육시설)	45.8%
		다용도 체육시설(헬스장 등 운동시설)	25.0%
10	운영상 문제 이유	행정에서 직접 운영 시 인력 부족	41.7%
		근무시간 외 주말 및 공휴일 운영상 문제	33.3%

2) 대면조사

건물 이용자와의 대면조사를 통해 설문조사에서는 알 수 없었던 요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건축전문가의 역할을 맡은 수원시정연구원은 건물이용자인 지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와 지동 주민들에게 인권과, 인권공공청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대면조사를 진행하였다.(표3-5, 표3-7) 근무자는 현재 지동 행정복지센터 근무 중인 동장, 행정공무원, 공익요원, 마을보안관 그리고 환경관리위원들이며, 주민들은 지동 주민 단체장(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10개 단체)들이 참석하였다.

근무자들은 민원 공간, 상담 공간, 회의실, 외부 창고, 중대본부, 휴게실 등에 대해 요

구사항을 언급하였다. 특히, 협소한 민원실, 복지상담실, 서류보관 장소, 주차장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하였다. 행정복지센터 특성 상 날씨로 인해 밤샘대기 업무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당직실과 휴게실이 부재한 것도 강조하였다. 그 외에는 회의실, 탕비실, 수유실, 복지상담실 후원물품창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동장실의 경우, 현재는 복지센터 진출입부에

〈표 3-5〉 지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들 대상 대면조사(1차 회의)

회의명	지동 행정복지센터 건축물 현황 조사 및 근무자들 의견수렴(대면조사)	
회의일시	2018.07.12.(목) 16:00~18:00	
회의장소	지동 행정복지센터 3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15-5)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동 행정복지센터 근무 직원(공무원, 공익, 보안관, 환경관리위원) - 수원시 인권센터(보호관, 주무관)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공공디자인센터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동 인권공공청사 신축에 반영할 의견수렴을 위해 지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원시 인권센터 소속 직원과 수원시정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함께 지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였음. - 동장으로부터 지동의 현황을 듣고, 대면조사를 진행하였음. - 센터 3층에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팀장, 민원실직원, 공익요원, 환경관리위원, 중대본부 직원) 대면조사를 진행하였음. - 대면조사 후 현 센터를 돌아보며 구체적 문제점들을 기록하였음. 	
회의사진		

위치하고 있어, 낮은 사람의 침입 등이 쉽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민원실 안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환경관리위원들은 충분한 휴식공간, 세면공간 그리고 청소도구를 비치할 창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추후 여성 환경관리위원들이 고용될 예정임에 따라 남/녀 휴게실과 샤워실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중대본부는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의 확장을 언급하였다. 기타사항으로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엘리베이터, 전기자동차 공간, 홍보물 비치 공간 등을 언급하였다.

무미건조한 박스 형태의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수원 성곽과 조화로울 수 있는 외관디자인을 선호하였으며, 평면의 형태는 가장 효율적인 사각형을 선호하였다.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 환경관리위원들, 민원 공직자들의 동선을 다르게 하여 서로의 프라이버시와 사고를 줄이는 것을 선호하였다. 표 3-6은 언급된 요구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3-6〉 신축 예정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근무자들 요구사항

배치	행정 근무자와 환경관리위원들의 공간을 분리한 배치 선호(근무시간 상이) 공간이 부족할 경우 주차장을 야외행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	
디자인	성곽과 어울리는 외관과 디자인 선호 단순한 형태 선호(관리의 용이 및 효율성 증대)	
평면	민원 공간	25~30명이 근무하는 공간으로 계획(기간제 직원 등으로 변동) 민원업무가 오래 걸리는 노인층이 많아 대기공간이 넉넉해야 함. 민원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창고가 근처에 있어야 하며, 공간이 여유로워야 함.
	상담 공간	상담공간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최소 2곳이 있어야 함.(상담자 프라이버시 보장) 바로 옆에 후원물품 창고가 있어야 함.
	회의실	대회의실(최소 200석) : 주민자치총회 주민5% 중회의실(50석) : 주민자치회, 통장모임으로 사용, 노래교실 등으로의 이용을 대비하여 방음시설 필요 소회의실(20~25명) : 월례회의, 직원회의, 소규모 모임 시 사용. 대회의실과 중회의실은 3층으로 위치하여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외부 창고	재설, 소방자재 보관창고용으로 필요함. 환경관리위원들의 의상과 청소 도구를 보관할 창고도 필요함.
	중대본부	예비군 물품창고가 좀 더 필요함.
	휴게실	행정근무자, 환경관리위원의 휴게실이 부족한 실정. 남/녀 분리된 휴게실이 필요함. 행정근무자의 경우 긴급 상황 때 간단히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2명~4명) 환경관리위원은 샤워실, 숙식 충분한 휴게공간이 필요함.
	기타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 수하물 상하차가 가능한 것을 선호) 홍보물 비치 공간, 청사 옥상 태양광, 전기차 공간이 필요함.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현 지동 행정복지센터의 문제점과 신축 예정 청사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200평 규모의 대형 행사공간을 필요 1순위로 언급하였다. 대회의실, 대강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행사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지동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 때문이었다. 지동은 주민들 간 커뮤니티가 잘 생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10개의 주민자치단체들이 있으며, 각 단체들은 김장행사, 경로잔치, 짜장면 봉사, 반찬봉사, 복날 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행사공간이 부재하여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다.

행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당처럼 계단식 바닥이 아닌 평바닥, 빔프로젝트 사용을 위해 높은 층고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민원실에서 대기할 공간, 청소년/아동을 위한 공간, 옥외 공간 등 필요한 공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이고 흔한 무겁고 위압적인 콘크리트 공공청사건물에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며, 전통한옥의 느낌이 나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내·외부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운영적 측면으로는 청소년들이 하교 후, 공부방으로 이용하거나 주민들이 퇴근 후,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근무시간 외에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치를 선호하였다.

〈표 3-7〉 지동 주민들 대상 대면조사(2차 회의)

회의명	지동 단체장 및 주민 의견수렴(대면조사)	
회의 일시	2018.07.19.(목) 16:30	
회의 장소	지동 행정복지센터 3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15-5)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동 각 단체장 및 주민 7명 - 지동 행정복지센터 근무 직원(민원팀장, 과장) - 수원시 인권센터(보호관, 주무관)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공공디자인센터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취지와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 신축부지에 대한 개요 설명 후 각 단체장 및 주민들과 현 청사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대면조사를 진행 - 배치, 디자인, 필요 공간에 대한 의견 수렴 - 각 단체장 및 주민들에게 추후 일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회의 사진		

〈표 3-8〉 신축예정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주민들 요구사항

배치		민원실, 동장실, 상담실은 접근이 용이하도록 1층에 배치 근무 외 시간인 주말 및 저녁때 사용을 위해 별도의 출입구를 두어 2층(혹은 3층)의 프로그램실로 출입하는 것 선호 (별도 출입구를 둘 경우, 책임자 몇 명을 지정한 후 키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디자인		성곽과 어울리는 외관과 전통적인 디자인 선호 전체를 한옥으로 하는 것보다 담벼락 등 부분적으로 한옥느낌을 내는 것 선호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가진 랜드마크적 건축물 지향
평면	마을 행사 공간	200평 규모의 대규모 공간 필요(슬라이딩 도어 등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선호) 주방조리시설 선호 평바닥, 높은 층고(빔 프로젝터 화면 시야 확보) 선호
	프로그램 공간	체육기구들이 있는 실(헬스장과 같은)이 있으면 좋겠음 현재 한 개의 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분야가 다른 문화프로그램을 위해 여러개의 공간이 필요
	상담 공간	상담 공간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함
	청소년/ 아동 공간	청소년을 위한 춤/음악 연습실 필요 공부방, 동아리방 등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필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놀이방 등이 필요
	옥외 공간	지상층 옥외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 대수를 최대한 확보 옥상에는 녹지, 휴게쉼터, 원두막, 차양막 등을 두어 행사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
	화장실	현 청사의 화장실은 건물 안쪽에 위치하여 야외 행사 중간에 화장실 이용이 불편 외부에 별도의 화장실을 두거나, 최대한 진출입부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선호
	탕비실	민원 공간에서 대기할 때 탕비 공간 필요
	기타	엘리베이터 설치 필수 충분한 주차공간 필요

3) 1차 계획안 도출

수원시정연구원은 대면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지동 인권공공청사에 필요한 주요 실과 필요 면적을 도출하였다.(표 3-9) 주요 실을 당초 사업대상지(면적 : 1,457㎡)에 최대한 배치하여 3층 규모의 대안 4개를 생성하였다. 그러나 사업대상지가 협소하여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첫 번째, 주요 실들의 면적이 충분치 않다. 두 번째, 청사의 경우 일반건축물보다 층고가 높아 주변건물들에 비해 커다란 볼륨을 가지게 되고 도시맥락과 조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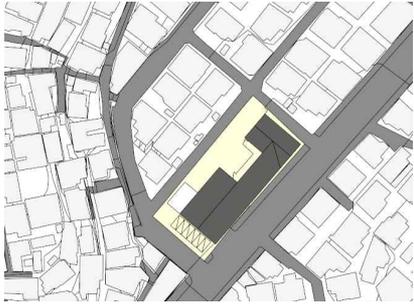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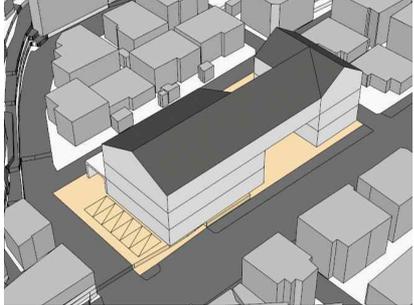
이룰 수 없다. 세 번째,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옥외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옥외경관 및 녹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

생성한 4가지 대안의 외형과 면적은 표 3-10~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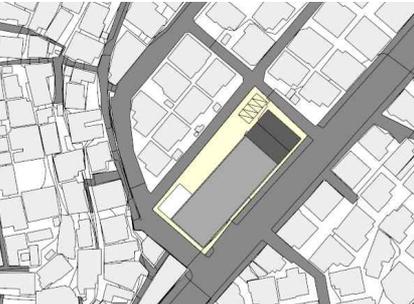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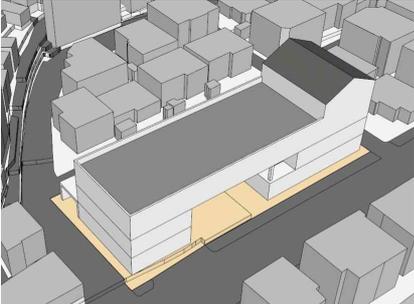
〈표 3-9〉 신축예정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주요 실과 면적

구 분	프로그램	필요 면적(㎡)
행정업무 공간	민원 공간(동장실, 민원실, 보안관 업무 공간포함)	320
	회의실(중회의실, 소회의실)	300
	각종창고(문서고, 비품실 등)	100
	휴게공간(남/녀 휴게실, 탕비실)	60
	복지 상담실(후원물품창고 포함)	40
	중대본부 공간(예비군물품창고 포함)	110
	환경 관리 위원 공간(남/녀 휴게탈의실, 창고 등)	200
	합계	1,130
문화복지 공간	대규모 행사공간(주민사랑방/대회의실/대강당)	660
	청소년/아동 공간	200
	프로그램실	150
	체력단련실	140
	도서관	150
	합계	1,300
총 합계		2,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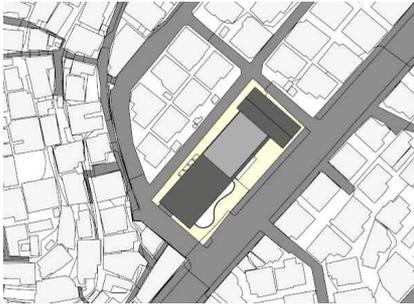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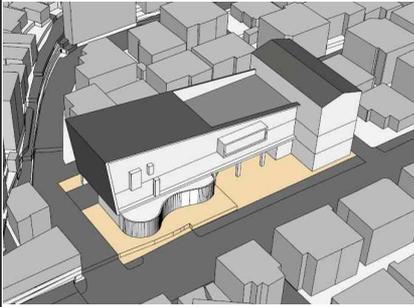
〈표 3-10〉 규모검토 Alt-01

구분	내용		
Alt-01			
	층수	면적(㎡)	주요 실 면적(㎡)
층별 면적	지하 1층	900	주차장 (600) 전기실, 기계실, 창고, 다용도실 (300)
	지상 1층	570	민원실, 상담실, 동장실, 창고(전산서고) (320) 홍보실, 휴게실, 보안관실, 소회의실, 탕비실 (250)
	지상 2층	570	동대본부, 소회의실 (350) 프로그램실, 탕비실, 휴게실 공용 (220)
	지상 3층	690	중회의실, 대회의실, 조리실 (380) 프로그램실, 예비군물품창고, 아동청소년실, 공용 (310)
	총 합계	2,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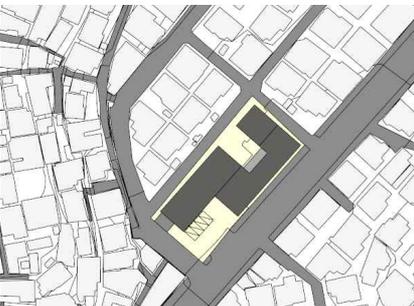
〈표 3-11〉 규모검토 Alt-02

구분	내용		
Alt-02			
	층수	면적(㎡)	주요 실 면적(㎡)
층별 면적	지하 1층	900	주차장 (600) 전기실, 기계실, 창고, 다용도실 (300)
	지상 1층	550	민원실, 상담실, 동장실, 창고(전산서고) (320) 홍보실, 휴게실, 보안관실, 소회의실, 탕비실 (230)
	지상 2층	550	동대본부, 소회의실 (380) 프로그램실, 탕비실, 휴게실 공용 (170)
	지상 3층	810	중회의실, 대회의실, 조리실 (400) 프로그램실, 예비군물품창고, 아동청소년실, 공용 (410)
	총 합계	2,810	

〈표 3-12〉 규모검토 Alt-03

구분	내용		
Alt-03			
	층수	면적(㎡)	주요 실 면적(㎡)
층별 면적	지하 1층	900	주차장 (600) 전기실, 기계실, 창고, 다용도실 (300)
	지상 1층	610	민원실, 상담실, 동장실, 창고(전산,서고) (320) 홍보실, 휴게실, 보안관실, 소회의실, 탕비실 (290)
	지상 2층	810	동대본부, 소회의실 (400) 프로그램실, 탕비실, 휴게실 공용 (410)
	지상 3층	540	중회의실, 대회의실, 조리실 (300) 프로그램실, 예비군물품창고, 아동청소년실, 공용 (240)
	총 합계	2,860	

〈표 3-13〉 규모검토 Alt-04

구분	내용		
Alt-04			
	층수	면적(㎡)	주요 실 면적(㎡)
층별 면적	지하 1층	900	주차장 (600) 전기실, 기계실, 창고, 다용도실 (300)
	지상 1층	630	민원실, 상담실, 동장실, 창고(전산,서고) (320) 홍보실, 휴게실, 보안관실, 소회의실, 탕비실 (310)
	지상 2층	680	동대본부, 소회의실 (350) 프로그램실, 탕비실, 휴게실 공용 (330)
	지상 3층	820	중회의실, 대회의실, 조리실 (430) 프로그램실, 예비군물품창고, 아동청소년실, 공용 (390)
	총 합계	3,030	

4)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1차 T/F팀 회의

앞서 생성한 4가지 대안들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T/F팀 회의를 수행하고, 근무자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T/F팀 회의에는 팔달구청 예산팀, 지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장, 수원시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주민회의에는 지동 통장들 31인이 참여하였다.

- T/F팀 회의 : 수원시정연구원은 대안 설계 시 발생했던 문제점 해결(협소한 부지)을 위해 2단계 사업으로 추가매입 부지 고려를 제안하였다. 팔달구 예산팀과 지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은 사업기간연장과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며 반대하였다. 그러나 인권영향평가협의회와 수원시 인권센터는 인권공공청사라는 사업의 특성을 강조하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과 면적이 충분치 않아 2단계 사업으로 추가매입 부지를 고려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따라서 추가매입 부지를 고려한 대안을 생성하여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 주민의견수렴 : 4개의 대안 중 외형은 Alt-03, 면적은 Alt-04를 가장 선호하였다. Alt-03을 선호한 이유는 혼한 콘크리트조 건물이 아닌 경사지붕과 지상층 넓은 옥외공간이었다. Alt-04의 면적을 가장 선호한 이유는 큰 연면적과 대회의실의 면적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옥상면적, 주차대수, 연면적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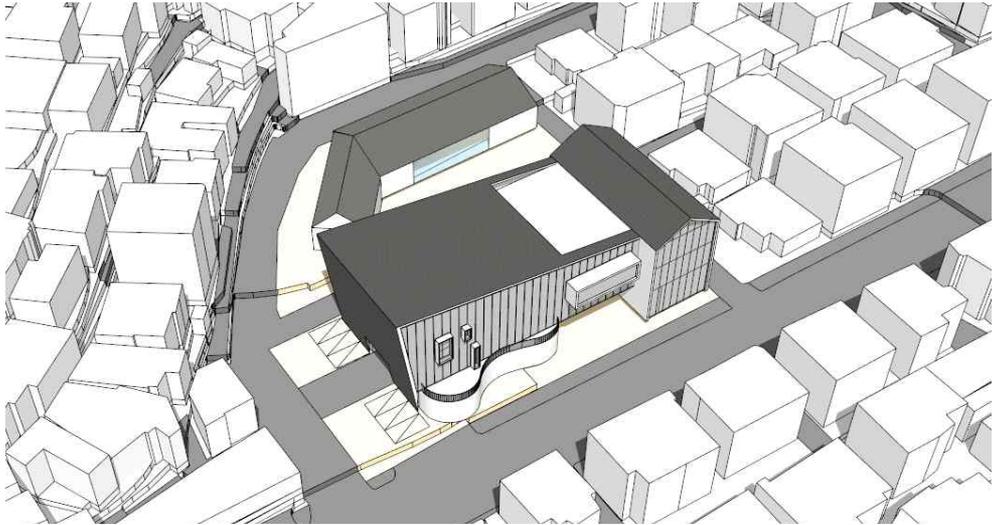
〈표 3-14〉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1차 T/F팀 회의(3차 회의)

회의명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1차 T/F팀 회의	
회의 일시	2018.07.24.(화) 16:30	
회의 장소	지동 행정복지센터 3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15-5)	
참석자	팔달구청 예산팀 (팀장, 주무관) 지동행정복지센터 (민원팀장, 과장) 지동 통장 31인 수원시 인권센터 (보호관,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협의회 1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2인)	
회의 내용	T/F팀 회의 : 사업대상지 변경 논의(추가매입 부지 고려 여부) 의견수렴 : 지동 통장들에게 인권청사 진행현황을 설명하고,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회의 사진		

5) 2차 계획안 도출

수원시정연구원은 앞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2차 계획안 1,2를 도출하였다. 계획안 1은 기존 사업대상지에 3층, 추가매입 부지에 1층 규모로 건립하는 것이며, 계획안 2는 기존 사업대상지에 2층, 추가매입 부지에 2층 규모로 건립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대상지+추가매입 부지(2,814㎡, 이면도로 포함) 내에 총 연면적 약 5,000㎡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연면적 5,000㎡의 이유는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그림 3-6〉 계획안 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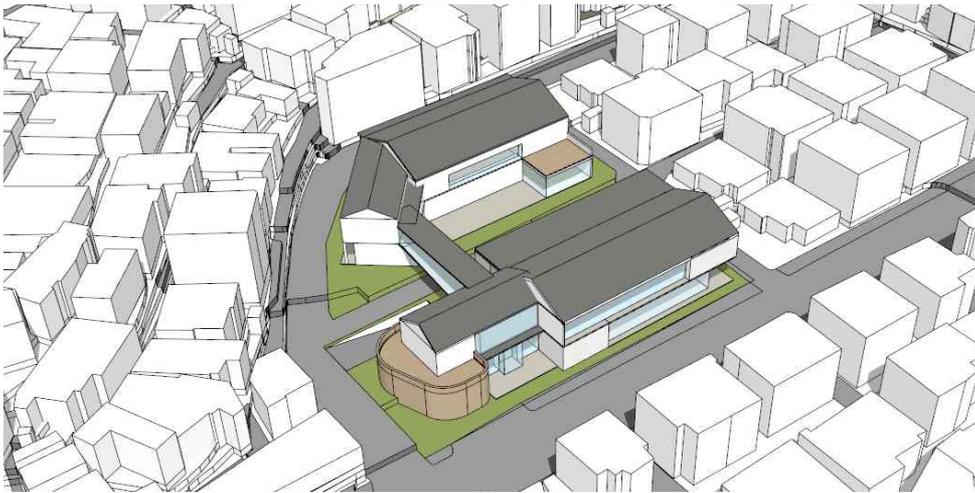
〈표 3-15〉 계획안 1 (3+1) 면적

구분	내용				
	층수	행정+문화복지동(1단계)		문화복지동(2단계)	
층별 면적		실(면적㎡)	면적(㎡)	실(면적㎡)	면적(㎡)
	지하 1층	주차장, 기계실		주차장, 기계실	
	지상 1층	민원실(280.00), 복지상담(14.00), 창고(42.00), 소회의실1,2(64.00), 당직휴게실(16.00), 동장실(14.00), 보안관실(16.00), 홍보실(24.00), 공용(158.86)	628.86	중회의실(180.00), 레크레이션(185.00), 소회의실(28.75), 세미나실(34.50), 주민자치실(46.00), 공용(147.25)	621.50
	지상 2층	프로그램실1,2,3(250.43), 소회의실(66.50), 중회의실(200.00), 동대본부(110.17), 공용(250.83)	877.93	-	-
	지상 3층	대회의실(334.25), 화장실(12.00), 창고(29.60), 청소년실(32.00), 프로그램실1,2(65.60), 공용(112.80)	586.25	-	-
	총계	4,909.23㎡(지하:2,194.69㎡+ 지상:2,714.54㎡)			

계획안 1은 그림3- 6, 표3-15와 같다. 1단계(기존 사업대상지)에서 3층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 2단계(추가매입 부지)에서 1층 문화·복지동을 추가 건립하는 대안이다. 1단계로 3개층이 선 건립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원하는 공간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위압적인 볼륨을 가지며, 각 공간이 협소하게 배치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3개층에 행정업무와 문화·복지 공간이 혼재되어 근무시간 외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계획안 2는 그림3-7, 표3-16과 같다. 행정업무와 문화·복지 공간이 분리되어 사용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볼륨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2단계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이 새로운 문화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3-7〉 계획안 2 (2+2)



〈표 3-16〉 계획안 2 (2+2) 면적

구분	내용				
	층수	행정동(1단계)		문화복지동(2단계)	
총별 면적		실	면적(㎡)	실	면적(㎡)
	지하 1층	주차장, 기계실		주차장, 기계실	
	지상 1층	민원실(309.97), 동장실(28.80), 복지상담실(23.40), 전산통신실(23.40), 민원실서고(46.80), 문서고(57.60), 당직휴게실(25.74), 유아놀이방(83.85), 수유탕비실(12.53), 공용(196.32)	808.41	헬스장(101.25), 레크레이션(121.50), 동아리방1,2(99.88), 미화원 휴게실(20.66), 창고(30.78), 공용(247.23)	632.64
	지상 2층	대회의실(233.10), 회의실(64.80), 예비군중대(28.98), 중대장실(15.12), 휴게실(23.40), 공용(274.20), 연경통로(92.93)	732.53	중회의실(96.64), 소회의실(28.35), 주민자치실(49.50), 동아리방(39.6), 공부방(143.10), 공용(200.09)	557.28
	총계	5,005.17㎡(지하:2,274.31㎡+ 지상:2,730.86㎡)			

6) 2차 T/F팀 회의

추가매입 부지를 고려한 2차 계획안 1,2 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T/F팀 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업부서, 공사부서, 지동 행정복지센터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의 방향을 수정하고 추가매입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만약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안 1 (3+1)로 진행하여, 우선적으로 많은 공간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완공까지 기간이 연장되면 주민들의 반발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협의회는 다양한 인권을 보장하고 건물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가매입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계획안 2 (2+2)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수원시 제1호 인권청사의 성공적 건립을 위해 기간연장을 감수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협조로 행정절차를 단축시켜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회의 결과, 단계별 사업이 가능한지 팔달구 예산팀에서 행정절차를 검토한 뒤, 3차 T/F팀 회의를 다시 진행하고, 쟁점사항을 건물이용자와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표 3-17〉 2차 T/F팀 회의(4차 회의)

회의 명	지동 인권청사 신축 관련 2차 T/F팀 회의	
회의 일시	2018.08.20.(월) 11:00	
회의 장소	팔달구청 2층 행정상황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참 석 자	인권센터 박동일 보호관, 채종근 주무관 수원시청 장진우 도시디자인팀장, 신재봉 시설공사과팀장 팔달구청 장순정 경리팀장, 박기복 주무관 지동행정복지센터 민원팀장 외 1인 수원시정연구원 안국진, 외 2인	
회의 내용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진정한 인권청사가 되기 위해 건립 의의를 논의 사업대상지 변경 후, 계획안 1,2 중 어떤 계획안으로 수행할 것인지 논의	
회의 사진		

7) 3차 T/F팀 회의

본 회의에서는 단계별 사업의 가능성과 주민공청회 발표자료, 그리고 설계공모 지침서를 검토하였다. 앞서 사업부서와 공사부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별 사업이 가능한 지, 1단계 사업 절차에 큰 문제는 없다고 검토하였다. 그러나 사업대상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결재권자에게 보고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였고, 보고회와 주민공청회 일정을 본 회의에서 함께 계획하였다. 사업부서(팔달구 예산팀)에서는 단계별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와 일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였으며,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계획안 1,2의 개요와 장단점을 정리하여 주민공청회에서 설명하기로 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작성한 지동 인권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지침서 검토 결과 수정사항 3가지가 언급되었다.

1. CPTED 인증을 위해서 지침서 내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
2. 인권적 용어 사용을 위해 지침서 내 단어 “종사자”를 “근무자”로 변경해야 한다.
3. 안암동 예시를 참고하여 심사 기준 평가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표 3-18〉 3차 T/F팀 회의(5차 회의)

회의명	지동 인권청사 신축 관련 3차 T/F팀 회의	
회의일시	2018.08.23.(목) 14:00	
회의장소	지동행정복지센터 3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15-5)	
참석자	수원시 인권센터 (보호관 2인,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협의회 1인) 수원시청 시설공사과(팀장, 주무관) 팔달구청 예산팀(팀장, 주무관) 지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장, 과장)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회의내용	단계별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검토 결재권자 보고회, 주민 공청회 일정 계획 설계공모 지침서 검토	
회의사진		

8) 인권영향평가

자연재해로 인해 주민공청회가 결재권자 보고회 이후로 연기되어, 인권영향평가가 먼저 수행되었다. 인권영향평가협의회는 추가매입 부지를 고려한 계획안과 설계공모 지침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인권공공청사로 완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정하였고, 추가매입 부지를 고려한 계획안 2 (2+2)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였다. 참석자들은 의견을 한 데 모아 동의서를 작성하여 T/F팀을 설득하였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표 3-20과 같다.

〈표 3-19〉 인권영향평가(6차 회의)

회의 명	인권영향평가
회의 일시	2018.08.27.(월) 16:00-18:00
회의 장소	수원시청 인권센터
참 석 자	인권영향평가협의회 6인 수원시 인권센터 (보호관, 주무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회의 내용	지동 인권공공청사 추진상황 인권영향평가 추가매입 부지 논의 지동 인권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지침서 검토
회의 사진	

〈표 3-20〉 인권영향평가 결과

계획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면 부지 매입에 3-4년의 시간을 투자할지라도 수원시 1호 인권청사에 걸맞는 건축물로 완성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계획안 2 (2+2)의 계획안이 지동과 조화롭고 알맞은 규모라고 판단됨. - 행정적으로는 부지매입계획서와 같은 구체적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함.
설계공모 지침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모르는 일반 건축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계 당선 이후 주민들과 회의가 수차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함. (추후 과업지시서에 넣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제시됨. (도시디자인팀장)) - 지침서 내 단계별 사업을 고려한 설계 수행을 명시해야 함. - 청사계획 부분에서 인권관련 단어들을 추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 - 인권 평가항목을 별도로 배분한 것은 좋지만 건축의 독창성, 주변과의 조화 등의 모든 항목에서 인권이 녹아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등으로 별도 명시) - 심사 전 인권에 관한 개념,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함.

9) 최종 계획안 및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모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은 최종 계획안을 도출하였고, 그림 3-8은 조감도이고, 표 3-21은 실별 면적표이다. 구체적 내용은 부록 1로 첨부하였다.

〈그림 3-8〉 최종 계획안 조감도



〈표 3-21〉 최종 계획안 실별 면적

구분	내용				
	층수	행정동(1단계)		문화복지동(2단계)	
		실	면적(㎡)	실	면적(㎡)
총별 면적	지하 1층	주차장(608), 기계/전기실(160), 창고(127), 문서고(74)	1,014	주차장(1,160), 창고(62), 공용공간(28)	1,250
	지상 1층	민원실(315), 동장실(30), 복지상담실(24), 전산통신실(24), 민원실서고(50), 문서고(60), 당직휴게실(24), 유아놀이방(75), 수유탕비실(13), 공용(196)	811	직원휴게실 남/녀(50), 창고(33), 헬스장(100), 레크레이션(142), 동아리방(80), 자치방범센터(25) 공용(223)	653
	지상 2층	대회의실(240), 회의실(72), 예비군중대(28), 중대장실(15), 휴게실(27), 공용(236)	650	중회의실(102), 소회의실(27), 주민자치실(38), 공부방(167), 공용(201), 연결통로(66)	632
	총계	5,010.00㎡ (1단계 : 2,475.00㎡, 2단계 : 2,535.00㎡)			

최종 계획안 개요는 표 3-21과 같으며, 대지면적 2,814.00㎡에 연면적 5,010.00㎡ 행정복지센터를 설계하였다. 1단계에는 2층 행정동을 먼저 건립하고, 2단계에서 추가매입 부지에 2층 문화·복지동과 연결통로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관련 도면은 부록 1, 설계 계획안에 수록하였다.

〈표 3-22〉 최종 계획안 개요

사업명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146 외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내부4구역 (높이제한 : 평지붕 14m, 경사지붕 18m 이하)
대지면적	2,814㎡ (신축부지 1,457.00㎡ + 추가매입 부지 1,357.00㎡(이면도로 포함))
도로현황	남측 12m 도로(세지로), 서측8m 도로(세지로339번길)에 접함
건축/연면적	1,673.80㎡ / 5,010.00㎡
건폐율/용적률	59.48% (법정 60%) / 97.69% (법정 200%)
구조	RC조
층수	지하 1층, 지상 2층
최고높이	11.65m
외부마감	화강석, 목재널, 목재루버, 티타늄아연판, 로이복층유리
설비개요	기계설비 : 전기히트펌프, 전열교환 환기장치, 우수재활용 전기설비 : EMP,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주차개요	지하 41대(장애인주차 2대 포함) (법정 26대이상)
조경면적	571.60㎡ (20.31%) (법정:15%이상)

〈그림 3-9〉 배치 및 동선계획



10) 추진상황 연석회의

추진상황 연석회의는 1부시장 주관으로 수원시 관련 부서장들과 효과적 추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본 사업이 전례 없는 부지매입과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수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인권공공청사이자 팔달구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추가매입 부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수원시 내 부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행정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장기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추진계획과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홈페이지, 마을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인권공공청사의 개념이 녹아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의 별칭을 지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표 3-23〉 추진상황 보고회의(7차 회의)

회의명	추진상황 보고회의	
회의일시	2018.10.18.(목) 11:00-12:30	
회의장소	지동창릉마을창작센터 2층	
참석자	수원시청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시설공사과장, 도시디자인팀장) 수원시 인권센터 (보호관 2인, 주무관) 팔달구청 (팔달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예산팀장, 주무관, 지동장)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2인)	
회의내용	지동 인권청사 건립 의의, 목적 설명(수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공공건축물 필요, 인권취약지역 개선 등) 지동 행정복지센터 최종계획안 설명(기존 신축부지(1단계)와 추가매입 부지(2단계)를 함께 고려한 단계별 사업계획안을 제시) 행정절차, 주민설득방안, 계획안, 향후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	
회의사진		

11) 주민공청회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행정적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단계별 사업(추가매입 부지 고려)의 최종계획안을 주민들과 협의하고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약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공청회에서의 나온 질의응답 내용은 표 3-25와 같고, 질문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답하였다.

〈표 3-24〉 주민공청회(8차 회의)

회의명	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주민공청회	
회의 일시	2018.11.20.(화) 15:00-16:30	
회의 장소	지동 행정복지센터 3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15-5)	
참석자	팔달구 예산팀 (주무관) 지동 행정복지센터 근무 직원 (공무원, 공익, 보안관, 중대장) 수원시 인권센터 (보호관, 주무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공공디자인센터 (연구위원, 연구원2인) 지동 주민 (통장들, 단체장들)	
회의 내용	인권센터 : 지동 인권청사 건립 의의, 목적 설명 수원시정연구원 : 최종 계획안 설명(추가매입 부지를 고려한 계획안 2+2 설명) 계획안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	
회의 사진		

〈표 3-25〉 주민공청회 질의응답

설계 의견	-신축부지 부근은 낙후되어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 허가되었음. 행정복지센터가 2층으로 건립되면 주변 건축물에 파문힐 것 같은 우려가 있음. 50년 이상의 수명을 기대하며 건립되어야 함.(공공청사는 층고가 높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예산팀 답변)
	-문고 공간이 필요하며, 소음이 발생하는 문화프로그램실(노래, 춤 등)과 붙어있지 않도록 계획해야 함. (1층은 정적인 공간, 2층은 동적인 공간을 배치하여 분리될 수 있도록 하였음. SRI 답변)
	-큰 규모의 청사인데 유지관리비가 삭감되거나 할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음. (문화시설의 규모가 클지라도 행정복지센터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의 가능성은 전무. 예산팀 답변)
행정 의견	-1단계, 2단계 차례대로 완공 될 경우, 2단계 완공 전까지 지하주차장 주차대수(15대)가 부족할 것 같은데 임시주차장의 계획이 있는지 문의하였음.(완공 전까지 추가매입 부지 내 매입완료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SRI 답변)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하였음.(본 사업은 인권청사 건립사업이며, 주민의 인권을 존중할 것이며, 의견을 매 단계마다 확인 할 것임. 예산팀 답변)

12)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 지침서

앞서 T/F팀 회의와 인권영향평가 회의 내용과 설계 조건들을 분석하여 지동 인권청사 설계공모에 필요한 설계공모 지침서를 작성하였다.(부록 2 : 지동 행정복지센터 건

립공사 인권친화적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지침서는 1장 : 건축 설계공모 개요, 2장 : 건축 설계공모 요강, 3장 : 건축 설계 지침, 4장 : 도서 작성 및 제출, 5장 : 심사 및 입상작 선정, 6장 : 각종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목차는 표 3-26과 같다. 일반 설계공모 지침서와의 차이점은 3장, 5장에서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 한 것이다. 3장 건축 설계 지침 내에는 인권을 반영한 청사로 계획될 수 있도록 ‘가’항부터 ‘카’항까지 기재하여 설계자가 인권을 고려한 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시설과 면적에 대한 내용은 시범사업에서 수행한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되었다.

〈표 3-26〉 설계공모 지침서 목차

목차	세부목차	인권 내용 포함
I. 건축 설계공모 개요	1. 건축 설계공모 목적	
	2. 사업 개요	
II. 건축 설계공모 요강	1. 설계공모 방법	
	2. 설계공모 일정	
	3. 참가등록	
	4. 현장설명회	
	5. 질의 및 응답	
	6. 작품제출	
	7. 작품심사	
	8.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소유권	
	9. 기 타	
III. 건축설계 지침	1. 계획의 기본방향	○
	2. 인권을 반영한 청사 계획	○
	3. 대지면적 및 주요시설 배치(안)	○
	4. 설계 시 고려사항	○
IV. 도서 작성 및 제출	1. 제출도서의 종류	
	2. 작성방법	
	3. 제출도서의 익명성	
	4. 제출방법	
V. 심사 및 입상작 선정	1. 작품심사	
	2. 심사방법	○
	3. 특기사항	
VI. 각종서식	-	

5장에서는 심사위원, 심사방법, 평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심사위원들이 공모작들의 인권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심사 전 인권 개념, 의의 등을 설명하도록 내용을 명시하였다. ‘인권개념 도입(10점)’, ‘건축계획의 작품성(60점)’, ‘건축계획의 기

술성(30점)을 평가항목으로 정하여 인권적 측면의 비중을 10%로 하였으며,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특별하게 단계별 사업을 위해 '건축계획의 작품성' 내에 단계별 계획의 연계성 및 확장 가능성 평가항목을 추가하였다.

〈표 3-27〉 설계공모 심사 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세부배점기준										
계	100												
인권개념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계획의 인권개념 도입 • 주변 환경과의 관계, 주민의 자율적 참여보장, 인권취약계층을 고려한 공간계획 • 공간, 형태 등의 인권친화적 계획 	<table border="1"> <tr>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r> </table>	A	B	C	D	E	10	9	8	7	6
A	B	C	D	E									
10	9	8	7	6									
건축계획의 작품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계획의 독창성 • 부지여건, 시설용도에 맞는 창의적 배치 및 외관 • 공공건축물로서 품격 	<table border="1"> <tr>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20</td> <td>17</td> <td>14</td> <td>11</td> <td>8</td> </tr> </table>	A	B	C	D	E	20	17	14	11	8
	A	B	C	D	E								
	20	17	14	11	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계획의 기능성 • 효율적인 부지활용 및 동선 • 합리적 평면 및 단면 계획 • 단계별 계획의 연계성 및 확장 가능성 	<table border="1"> <tr>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20</td> <td>17</td> <td>14</td> <td>11</td> <td>8</td> </tr> </table>	A	B	C	D	E	20	17	14	11	8
A	B	C	D	E									
20	17	14	11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과 조화 • 주변 시설물과 어울리는 색채 및 재료 •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 	<table border="1"> <tr>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r> </table>	A	B	C	D	E	10	9	8	7	6	
A	B	C	D	E									
10	9	8	7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관리의 효율성, 경제성 •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간구성 • 에너지효율 및 환경친화적 재료 	<table border="1"> <tr>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r> </table>	A	B	C	D	E	10	9	8	7	6	
A	B	C	D	E									
10	9	8	7	6									
건축계획의 기술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설비계획의 우수성 • 경제적·합리적 구조 • 설비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table border="1"> <tr>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20</td> <td>17</td> <td>14</td> <td>11</td> <td>8</td> </tr> </table>	A	B	C	D	E	20	17	14	11	8
	A	B	C	D	E								
20	17	14	11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공법 및 비용 • 주변을 고려한 공사 방향 • 적정 공사비 	<table border="1"> <tr>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r> </table>	A	B	C	D	E	10	9	8	7	6	
A	B	C	D	E									
10	9	8	7	6									
감 점	()	○ 감점처리대상 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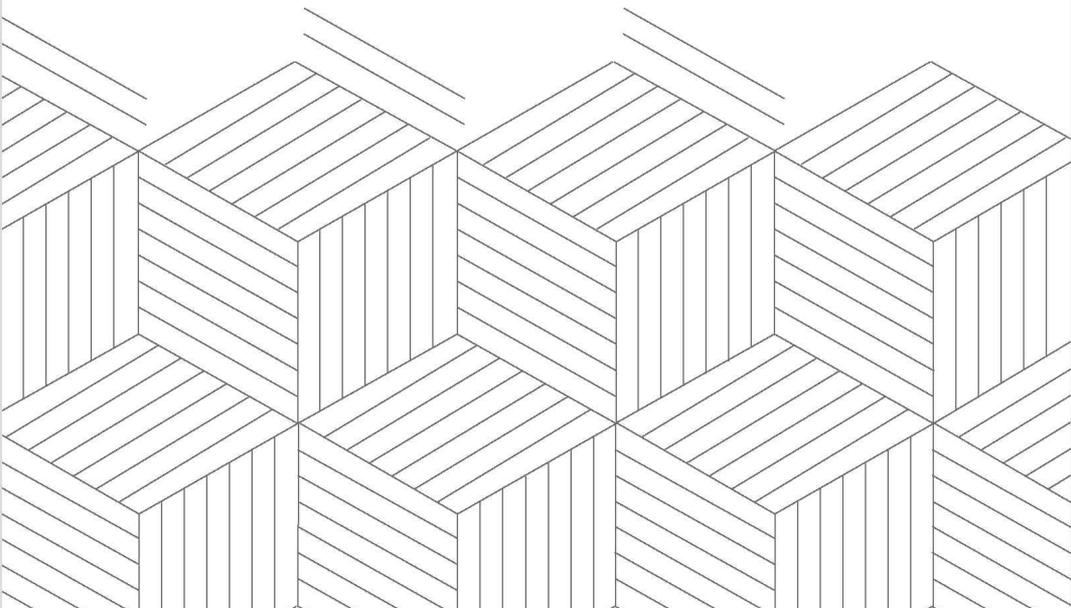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인권공공청사 건립 시범사업을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소결을 얻었다.

1. 지동 행정복지센터가 수원시 제1호 인권공공청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종 계획안과 설계공모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2.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을 정립하였다.
3.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초석역할을 하였다.
4. 지동 인권공공청사 건립을 위해 기획단계뿐만 아니라 설계용역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모두 시범사업으로 수행하여 완공까지 수행한 모든 단계를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4장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가이드라인

제1절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가이드라인
제2절 “기획단계”에서의 가이드라인



제4장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가이드라인

제1절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가이드라인

1. 2018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

본 연구에서는 2017년에 개발된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안)”에 대해 선행연구 분석 및 시범사업 수행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2018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안)”을 개발하였다. 시행절차는 그림 4-1과 같다.

2017 시행절차(안)에서의 한계는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단계를 큰 틀에서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시행절차(안)은 시범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기존 방식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주민의견과 수차례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친 후 결과물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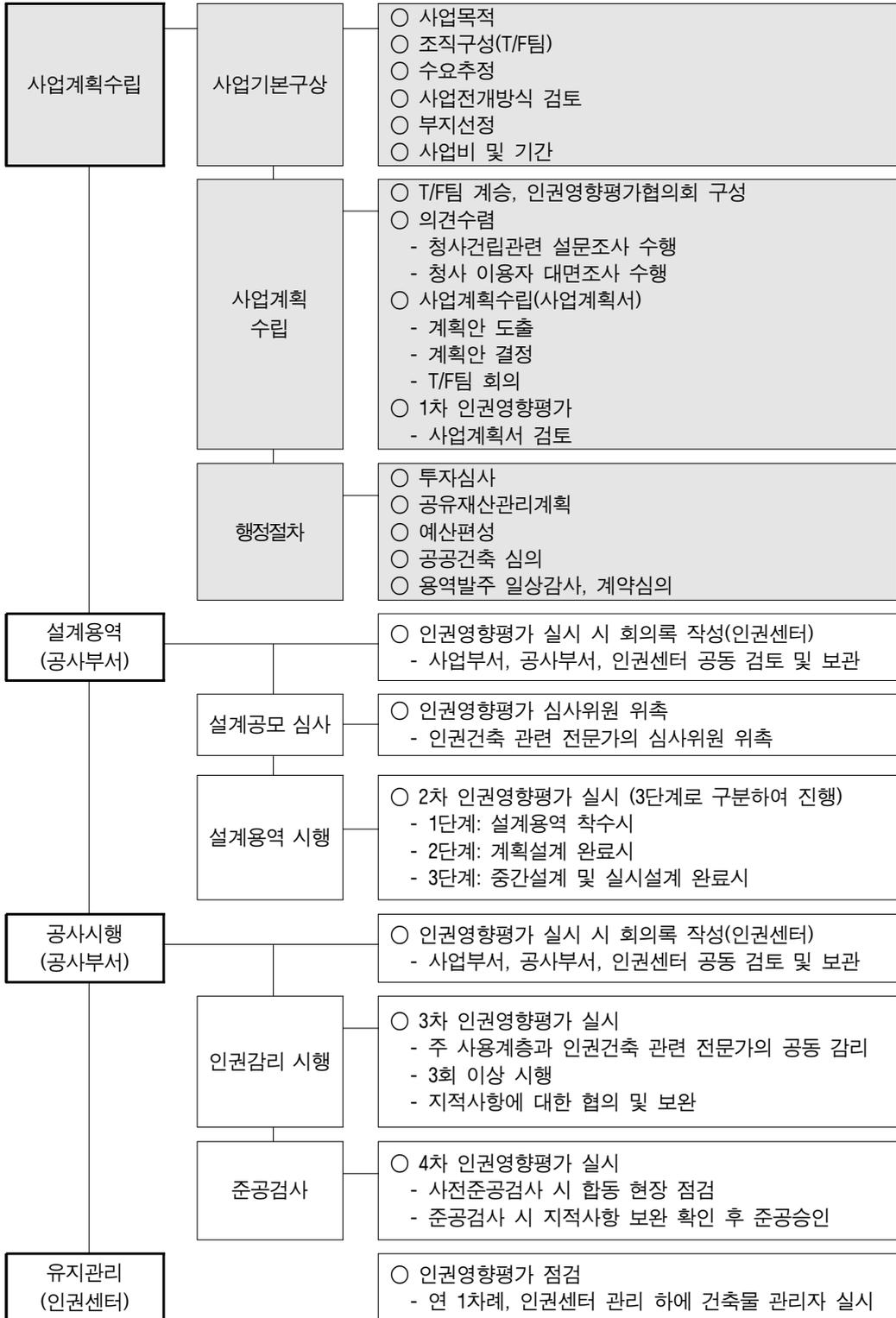
사업추진에 있어 모든 기획, 설계, 공사,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업기획단계인 사업계획수립은 인권영향평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판단된다. 기획단계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실사용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 환경과 건축물의 기능적 조화를 검토하여 사업계획과 건축방향을 결정해야한다. 기획단계의 사업계획수립에는 3개의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업기본구상 단계로, 사업목적 설정하고 TF사업전담팀을 구성하여 개략적인 수요추정, 사업전개방식 검토, 부지선정 검토, 사업비와 기간 등 수립한다.

둘째 사업계획수립 단계로, 사업기본구상의 내용에 대해 인권영향평가협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사업계획을 계속 수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이용자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다.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계획안을 도출한다.

셋째 행정절차 단계로, 사업부서는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편성, 계약심의 등 행정제반의 절차를 수행한다. 이러한 시행절차(안)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1〉 2018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안)



〈그림 4-2〉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기획단계 가이드라인

구분	항목/근거법령	검토내용
사업기본구상	사업목적	사업 적합성 및 취지
	조직구성	T/F 팀 구성 官 - 사업부서, 공사부서, 관련부서, 시설 이용부서 專 - 건축/인권 전문가
	수요추정	수요조사 수행여부, 유사시설 사례조사, 수요추정, 규모산정
	사업전개방식 검토	기존 시설 활용(증개축), 신축 결정
	부지선정	입지조건 분석, 전용허가 검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부지규모 검토
	사업비 및 기간	임대비 혹은 부지 매입비 건축비(설계, 시공, 감리비) 사업기간(설계, 심의, 시공, 사용승인) 검토
시장 보고		
증기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법 제33조	
부지매입	내부방침	
사업계획수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2항)	사업 T/F 팀 계승	사업전개, 일정조율, 인권영향평가협의회 구성 (官 - 사업부서, 공사부서, 관련부서, 시설 이용부서, 專 - 전문가)
	의견수렴 (수요분석)	사업 대상 시설물 실제 이용자(설문 및 대면조사) 이용자(사업대상 시설 근무자, 지역주민)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시설, 사업 규모/내용, 사업기간 - 대지조건 검토 : 기반시설유무, 지반상태확인, 문화재조사수행여부, 교통영향평가유무 등 - 계획기준검토 : 법규검토,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인증,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적용, BF인증, CPTED, 내진설계 적용여부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디자인방향설정,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 - 주민설명회 개최 후, 의견반영, 인권영향평가협의회 자문 - 사업 T/F팀 회의(설계공모 지침서 초안 검토, 행정절차 논의) - 주민공청회, 사업계획(계획안+사업비+부대비) 완료, 자원조달계획, 타당성검토 - 발주방식,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 인권영향평가(사업계획서 검토)
시장 보고		
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40억 원 이상은 중앙심사) 진행 검토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부지매입, 토지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수행
예산편성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규정 등	기능별, 사업별, 성질별로 주요 및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 국도비 등 보조금 수령에 따른 예산 유형별 확보 및 집행 일정 계획
공공건축 심의 등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2항, 제23조	사업계획서 내용 심의
용역발주 일상감사, 계약심의	지자체 일상감사 및 계약심의 관련 조례	
시장 보고		
사업시행 방침 완료		

기획 단계

제2절 “기획단계”에서의 가이드라인

그림 4-2는 2018 수원시 인권공공청사 “기획단계인 사업계의의”인 「사업계획수립」 단계는 아래<그림 4-3>에서처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사업 기본구상
- ② 사업계획 수립
- ③ 행정절차

2018 가이드라인은 사업부서 및 공사부서의 업무와 건축전문가와 건물 이용자가 참여할 단계에서의 실무 절차, 내용, 회의 등을 토대로 개발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부서, 관련부서, 건물 이용자, 건축전문가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인권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3〉 기획단계 가이드라인 구성

	기획단계 가이드라인
1. 사업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조직구성 · 수요추정 · 부지선정 · 사업비 및 기간 검토
2. 사업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T/F팀 계승 · 건물이용자 의견수렴(주민+근무자) · T/F팀, 건물이용자의 수차례 계획안 피드백 · 사업 기간, 대지조건 검토, 디자인방향설정, 친환경 고려, 타당성검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계획안, 설계 공모 지침서) 작성 · 인권영향평가 실시
3. 행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 · 공유재산관리계획 · 예산편성 · 공공건축 심의 · 용역발주 일상감사, 계약심의

1. 사업 기본구상

사업 기본구상은 T/F팀 구성, 사업의 취지 수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업 기본구상 단계부터 인권센터와 건축전문가가 참가하여 사업의 방향설정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부지를 선정함과 동시에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 기본구상 단계의 체크항목은 <표 4-1>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목적 : 사업부서가 사업 적합성 및 취지를 수립한다.
- ② 조직구성 : 사업부서, 공사부서, 관련부서, 인권센터, 건축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한다.
- ③ 수요추정 : 지역 내 인구, 특성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시설의 수요, 유사시설 사례조사, 규모산정을 수행한다.
- ④ 사업전개방식 검토 : 지역 내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증개축할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한다.
- ⑤ 부지선정 : 신축할 경우, 대상후보지에 대해 전용허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조건, 부지규모 등을 검토 및 분석하여 부지를 선정한다.
- ⑥ 사업비 및 기간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 비용과 총 사업기간을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표 4-1> 사업기본구상 단계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항목	비고
① 사업목적	사업 적합성 및 취지	사업부서
② 조직구성	T/F팀 구성 인권영향평가협의회	사업부서+공사부서+관련부서 +인권센터+건축전문가
③ 수요추정	수요조사 수행여부 유사시설 사례조사 수요추정(편익 산정), 규모산정	사업부서+공사부서+인권센터 +건축전문가
④ 사업전개방식 검토	기존시설 활용 여부 검토(증개축 리모델링 등)	사업부서+공사부서+관련부서 +인권센터+건축전문가
⑤ 부지선정	입지조건 분석 전용허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검토 부지규모 검토	사업부서+공사부서+관련부서 +건축전문가
⑥ 사업비 및 기간	임대비/부지매입비/건축비(설계, 시공, 감리비) 책정 사업기간(설계, 심의, 시공, 사용승인) 검토	사업부서+공사부서+건축전문 가

2. 사업계획 수립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목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투자의 우선 순위와 시기를 검토하여 재원의 분배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¹⁵⁾ 계획수립은 사업부서가 수행하며, 그 내용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사항,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등을 포함해야 한다.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추후 투자심사 시 평가하는 항목 중 하나이고, 수립하지 않을 경우 투자심사위원으로부터 투자 재검토 및 반려당할 수 있다.

2) 부지매입

부지매입은 사업 기본구상에서 사업부서와 건축전문가 검토한 부지에 대해 결재권자에게 승인 받고 매입한다. 사업부서가 독단적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 부지를 선정한다면, 사업 진행 중에 부지가 변경되어 사업비가 증감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지선정에서부터 건축전문가로부터 면밀히 검토를 받아 부지를 선정한다면, 사업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3) 사업계획수립

인권공공청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사업계획수립 단계는 T/F팀, 건물이용자, 건축전문가가 함께 계획안에 대해 협의하고 피드백하면서 사업계획서(계획안, 설계공모 지침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건축전문가는 기본구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설문조사 및 대면조사를 통해 건물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도출한다. 건축전문가는 이용자, T/F팀, 인권영향평가협의회와의 회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정리된 최종 계획안을 토대로 공사부서와 협의하여 설계공모 지침서를 작성한다. 사업계획서는 계획안과 설계공모 지침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4-2, 체크리스트>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체크리스트이며, 의견수렴, 회의, 계획안도출 등 사업계획수립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이다.

15) 지방재정법 제33조

의견수렴은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로 나눠 추진한다.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설문조사에서 알 수 없는 프로그램과 실의 용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면조사를 실시한다. 건축전문가는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건축물의 공간계획, 건축디자인, 옥외공간 활용, 설비계획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작성한다. 본 시범사업에서는 3차례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계획안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사업의 현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최종 계획안은 설계내용과 개념을 설계개요에 설명하고 조감도, 투시도, 배치·평·입·단면도의 기본 설계도면에 담아 제시하였다.

〈표 4-2〉 사업계획수립 단계 체크리스트

구분	수행 및 포함 내용	비고
사업 T/F팀 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본구상 단계에서 조직한 T/F팀 계승 · 사업부서에서 청사 공간프로그램 및 면적 제공 · 인권영향평가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협의회는 건축전문가, 인권 센터 (7인 내외)로 구성
의견수렴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건립관련 설문조사 수행 · 청사 이용자 대면조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행사, 옥외공간 조성 - 배치(주차 및 동선) - 공간프로그램, 층별 공간계획 - 외형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 설비(엘리베이터, 취사설비, 운동기구 등) -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1000명 내외로 설문조사 수행 · 청사 근무자와 주민 30명 내외로 대면조사 수행 · 대면조사 시 인권센터, 건축전문가 필참
사업 계획 수립	<p>계획안 도출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공간프로그램과 면적표 작성 · 1차 계획안 도출 · T/F팀, 건물이용자 회의 수행(1차 계획안 선정 및 피드백) · 2차 계획안 도출 · T/F팀 및 건물이용자 회의 수행(2차 계획안 피드백) · 최종 계획안 도출 · 회의 과정과 최종 계획안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이용자, 사업부서, 인권센터, 전문가 필참
	<p>계획안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간/규모/내용, 도입시설 · 대지조건 검토(기반시설 유무, 지반상태, 문화재조사수행여부, 교통영향평가 유무 등) · 계획기준 검토(법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에너지효율화, 녹색건축인증, BF인증, CPTED, 내진설계 등) · 지속가능성 및 공공적 품격 제고방안 · 디자인방향 · 타당성검토 · 도면(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p>T/F팀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방식 - 추진 일정 점검 ·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배려한 설계 방향 - 인권을 배려한 공모작 심사 평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안 도출과정을 설계 공모 지침서에 반영
	<p>사업계획서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에 인권을 배려하였는지 인권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보완 후 최종 결재권자 보고

3. 행정절차

1) 투자심사

투자심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사업별 재정 투자 계획을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동을 위한 것이며, 재정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나, 실질적인 내용은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주요 검증절차이다.¹⁶⁾

공공청사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해 시·도 의뢰 심사(40억 원 이상은 중앙 의뢰 심사)를 거쳐야 한다.¹⁷⁾ 투자심사 절차는 표 4-3과 같이 수행된다.

〈표 4-3〉 투자심사 절차

업무프로세스	체크항목	수행부서
기초심사자료 작성	· 타당성 조사 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 확인·조치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정확여부를 확인·보완 ·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시행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부서 내 투자우선순위 결정	해당 지자체 사업부서 및 투자심사부서
사전실무심사	· 단위사업계획·분석·검토 · 사업부문별 자원배분검토 · 회계별 투자가용자원 판단(최근 3년간 결산치 기준) · 가용자원 판단 · 실무심사조서 작성 · 현재진행중인 사업을 종합·분석	투자심사부서
현지심사 실시	· 사업대상지 위치, 사업규모, 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 · 대상지의 지장물 등 추진 저해요인 · 사업의 주민수혜여부, 주변 동향 및 민원발생 가능여부 · 기타 사업의 필요성, 합리성, 연계성 여부 (※주민생활지역과 인접한 경우, 주민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타 사업과 중복되거나 연결되는 경우, 그 외 현장확인 으로 적정성이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	투자심사부서
심사안건 배분 및 사전교부	· 실무심사결과, 도면, 참고자료 등 교부 · 전문분야별로 배분하고 1건 사업당 2인 이상에게 배분	투자심사부서
투자심사위원회의 개최	·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 설명대상사업 선정 · 위원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의견 불일치 시 다수결로 결정)	투자심사부서
심사결과 통보 (14일 이내)	· 관계중앙부처 및 시·도 ·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투자심사부서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 투자사업 이력관리 (핵심정보관리→평가→관리계획 수립 등)	투자심사부서 (시·도 및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2017)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조사매뉴얼」.

16)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2016),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1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¹⁸⁾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수원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두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¹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0일이다.²⁰⁾

인권공공청사 건립은 수원시의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건축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예산이 확정된다.^{21),22)}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대규모 사업은 사업 추진이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국회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건축 사업 중 사업목적의 공공성·당위성을 감안하여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²³⁾ 하지만, 인권공공청사의 경우 공공청사라 하더라도 복지시설 등 복합청사로 건립되는 사례가 있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공공건축 심의 및 용역발주 일상감사, 계약심의

공공기관은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수준의 품격과 합리적 기준에 맞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²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장에게 제 공해야 한다. 향후 저변확대를 위해 각 지역에도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두고 건축기획업무

1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19)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

20)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21) 국가재정법 제29조, 제38조, 제50조

22) 이규철 외(2016),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3) 국가재정법 제38조

2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에는 ①사업규모, 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②발주방식, ③디자인관리방안, ④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성 제고방안, ⑤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제고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심의 주요 체크항목은 <표 4-4>와 같다. 심의 후에는 최종결재권자 결재를 수행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한다. 그 직전에 용역발주 일상감사를 수행하여 결재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의 수행으로 기획단계는 마무리 된다.

<표 4-4> 공공건축 심의 체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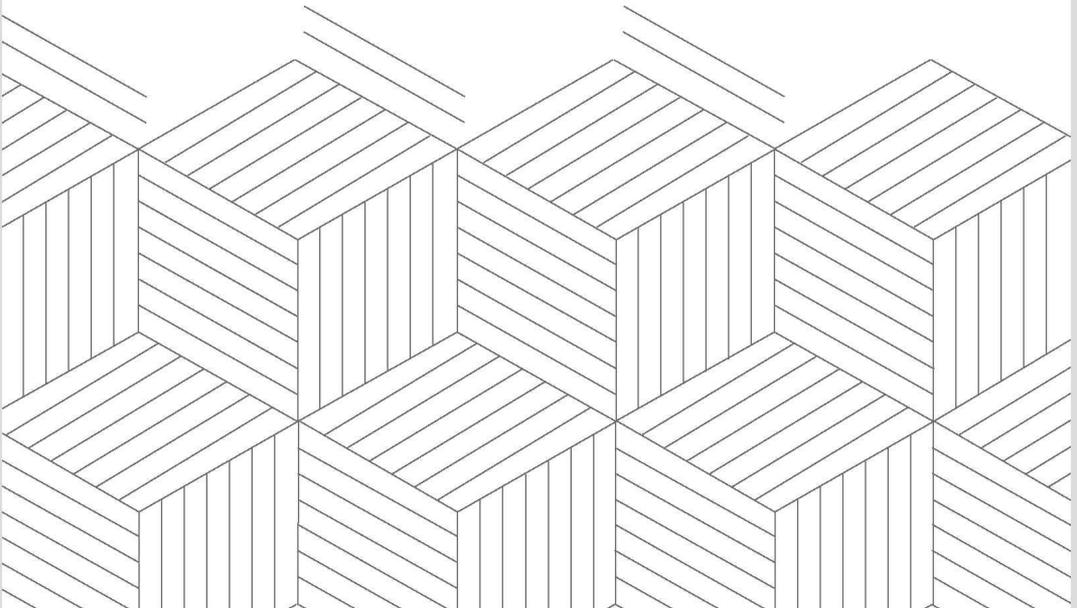
구분	체크항목
사업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일정계획 · 대상부지 · 기타 사업추진 시 예상 문제점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 배치계획, 규모,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예산	· 예산수립 현황 · 자원조달 및 집행계획
디자인 관리방안	· 발주방식의 적정성 · 디자인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자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성과와 개선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하지만, 공공건축심의 내용은 사업검토 위주로 되어 있다. 설계기획에 관한 내용은 아주 개략적으로 디자인관리방안이라는 항목에 몽글려 넣어 두었으나 실질적인 기획설계는 누락되어 있다. 공공건축 사업에서 ‘사전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건축심이라는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 여기에 ‘사업계획’ 외에 ‘기획설계’를 넣어두어 인권을 강조한 공공건축 심의가 필요하다.

인권건축 건립을 위해서는 건축기획설계가 필요한데, 현행 사업계획서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인권건축에는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획설계안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설계지침서와 평가항목을 작성해야만 한다.

제5장 결론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요약

본 연구는 공공건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행방안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렇다할 선행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실행방안 연구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수밖에 없다. 시범사업 대상건물 선정에 대해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정하였다. ① 사업의 시급성, ②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지역, ③ 사업 추진이 바로 가능한 지역, 3가지 기준을 검토한 후, '지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인권센터는 사업부서(팔달구 행정지원과), 공사부서(시설공사와), 관련부서(지동사무소), 수원시정연구원으로 구성된 인권청사 건립 TF팀을 조직하였다.

연구의 명칭이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로, 건축에서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는 지금껏 사용해 본적이 없기에 생소하기만 하다.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공간 환경과 관련하여 '인권'에 관한 규정을 직접 명시하고 있는 법령은 없다. 인권건축이라는 용어 정의조차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한다는게 쉽지 않다. 막연하지만, 인권건축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소외계층 없이 다양한 모든 이를 포용하는 공간으로 접근하였다.

공공건축물의 특징은 건축주와 이용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건물의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반영하는게 인권건축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 설문과 대면조사는 주민 스스로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행정서비스와 일상적인 생활서비스를 두어 모든 이들이 차별없는 청사이용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다섯 가지로 지향점을 도출했다.

첫째,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지동근로자, 미화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건축 조성과정에서부터 참여하여 그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둘째, 청사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공간을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가 보장받는 공간으로 대·중·소회의실을 각각 두어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청사로 계획한다.

셋째, 모든 이용자가 차별없는 행정서비스, 문화여가생활, 건강·체육시설, 주민역량교육, 주민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넷째, 인권 소외계층이 없이 다양한 연령별로 유아실, 공부방, 동아리방, 주민자치실 등을 두어 인권 수요증진을 위한 복합청사로 계획한다. 또한 인권약자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턱을 없애고, 지하주차장에서 층마다 연결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두었으며, 각층마다 장애인 화장실을 두었다.

다섯째, 친환경적으로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2층의 나지막한 휴먼스케일의 건물로 조성하였다. 각 층에는 테라스와 발코니를 두어 외부공간과 소통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시의 전면가로에는 행정기능을 두었으며, 배면 주거지에는 복지기능을 두어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지의 성격에 맞는 복합청사로 계획하였다.

앞서 복합청사에 요구되는 지향점을 토대로, ①‘모두가 존중받는’, ②‘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③‘이용자의 다양성 존중’, ④‘사회적 포용력 있는’, ⑤‘친환경적인’ 으로 인권원칙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을 배분하였다.

수원시 인권센터와 수원시정연구원은 설문과 대면조사를 통해 주민들과 지동 근무자들로 부터 요구사항 정리하여 공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였다. 당초 행정에서 판단하기를, 지동은 ‘오원춘사건’으로 안전취약지역으로 인식되어 있기에 지동의 이미지쇄신 차원에서 ‘장남감 도서관’과 같은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 지동의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를 바꿔 보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이 지역에 고령자가 많아서인지 모르지만 건강·운동시설(헬스장, 레크레이션)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밤늦게 까지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과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동아리방’ ‘주민자치실’ 등을 요구하였다. 민원실이 있는 로비에는 카페보다는 ‘유아실’을 선호하였다.

실제 의견수용과정에서, 당초 행정에서 판단했던 공간의 쓰임과 이용자가 원하는 공간의 쓰임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용자가 원한다고 하여 모두를 수용할 수만은 없었다. 이 모두를 수용하려면 보다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에, 꼭 필요한 공간과 우선순위를 두어 적절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협의해가며 면적을 설정하였다.

행정에서 제시한 연면적은 3,000㎡이었으나,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5,000㎡로 면적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현재 매입 완료된 부지(세지로 339 외 8필지, A=1,457㎡)를 1단계사업으로 하여 행정동을 신축하고, 2단계사업으로 뒤편의 부지(세지로 339번길 6-1 외 7필지, A=1,357㎡)를 매입하여 복지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단계사업을 진행하면서 2단계의 토지보상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의 행정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였다. 사업부서에

서는 원래 계획에 없던 2단계 사업부지가 추가되면서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고충을 안게 되었다. 이용자와 계속되는 협의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을 반영하여 최종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설계안을 토대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고 평가항목과 배점표를 명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기획단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인권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추상적이기에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인권영향을 평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않았다. 공공건축에서 인권으로의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인권을 담기위한 작업방식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2017년 진행했던 연구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2018년 연구는 실제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기획단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흐름을 플로차트로 작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림 5-1〉 기획단계 가이드라인 구성

	기획단계 가이드라인
1. 사업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조직구성 · 수요추정 · 부지선정 · 사업비 및 기간 검토
2. 사업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T/F팀 계승 · 건물이용자 의견수렴(주민+근무자) · T/F팀, 건물이용자의 수차례 계획안 피드백 · 사업 기간, 대지조건 검토, 디자인방향설정, 친환경 고려, 타당성검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계획안, 설계 공모 지침서) 작성 · 인권영향평가 실시
3. 행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 · 공유재산관리계획 · 예산편성 · 공공건축 심의 · 용역발주 일상감사, 계약심의

본 연구는 기획단계에 국한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건축환경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기획은 이용자의 권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소외계층 없이 다양한 모든 이를 포용하는 공간으로 접근했는가를 고심해야한다. 향후, 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전 과정에서의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완료된 뒤 '공공건축 인권백서'로 내용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5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권개념이 불명확하기에 각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한 수행

인권건축에 대한 불명확성 때문에 건축전문가는 ‘주민참여디자인’인지 ‘인권건축’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관적 해석에 의한 사업계획수립이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권건축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객관화된 지표마련이 필요하다.

2) 사업기본구상에서 부터 건축전문가의 자문이나 참여가 필요

현재 사업기본구상은 사업부서의 건축직 주무관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주무관이 도시계획과 등에 의뢰하여 시소유의 부지 몇 개를 비교분석한 후,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건물의 프로그램과 용도와는 동떨어진 지역이거나 불합리한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추진 중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여 바로 잡으면 다행이지만, 잘못된 계획인줄 모르고 사용승인까지 가게 된다면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가증될 것이다. 사업초기에 건축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검토 뿐만 아니라 부지선정에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건축전문가의 인력풀과 대가기준마련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기획 외에 기본설계에 준하는 계획설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부서에서는 기획단계의 비용을 사전에 미리 예산 편성해야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계획설계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이 전무하기에, 기획단계에서의 계획설계 업무대가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4)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협의비용과 자문비 산정

설계진행과정에서 이용자와의 협의와 인권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 인권영향평가협의회의 자문비 등의 대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5)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정량화

인권영향평가 항목이 정성적 평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평가자의 성향과 지식수준에 의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의 명확한 지표를 개발하여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평가의 공정성과 방향을 명확히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김혜련, 2018, 지역재생 관점의 공공건축 기획·운영시스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복구청, 2015, 인권을 세우다 인권건축의 첫걸음 안암동 인권청사 백서
- 송세련, 2017, 인권경영 표준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수원시, 2018,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p30-49
- 이규철 외, 2016,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영안, 2017,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임유경 외, 201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와 개선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07-118
- 한국인권재단, 2016, 기업 인권영향평가 수행가이드

〈영문 자료〉

- Désirée Abrahamas and Yann Wyss, 2010, Guide t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HRIAM),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 Faris Natour and Jessica Davis Pluess, 2013, Conducting an Effectiv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 The World Bank & Commissioned by the Nordic Trust Fund, 2013,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 A Reivew of the literature, Differences with other forms of Assessments and Relevance for Development
- United Nations, 2015,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 부 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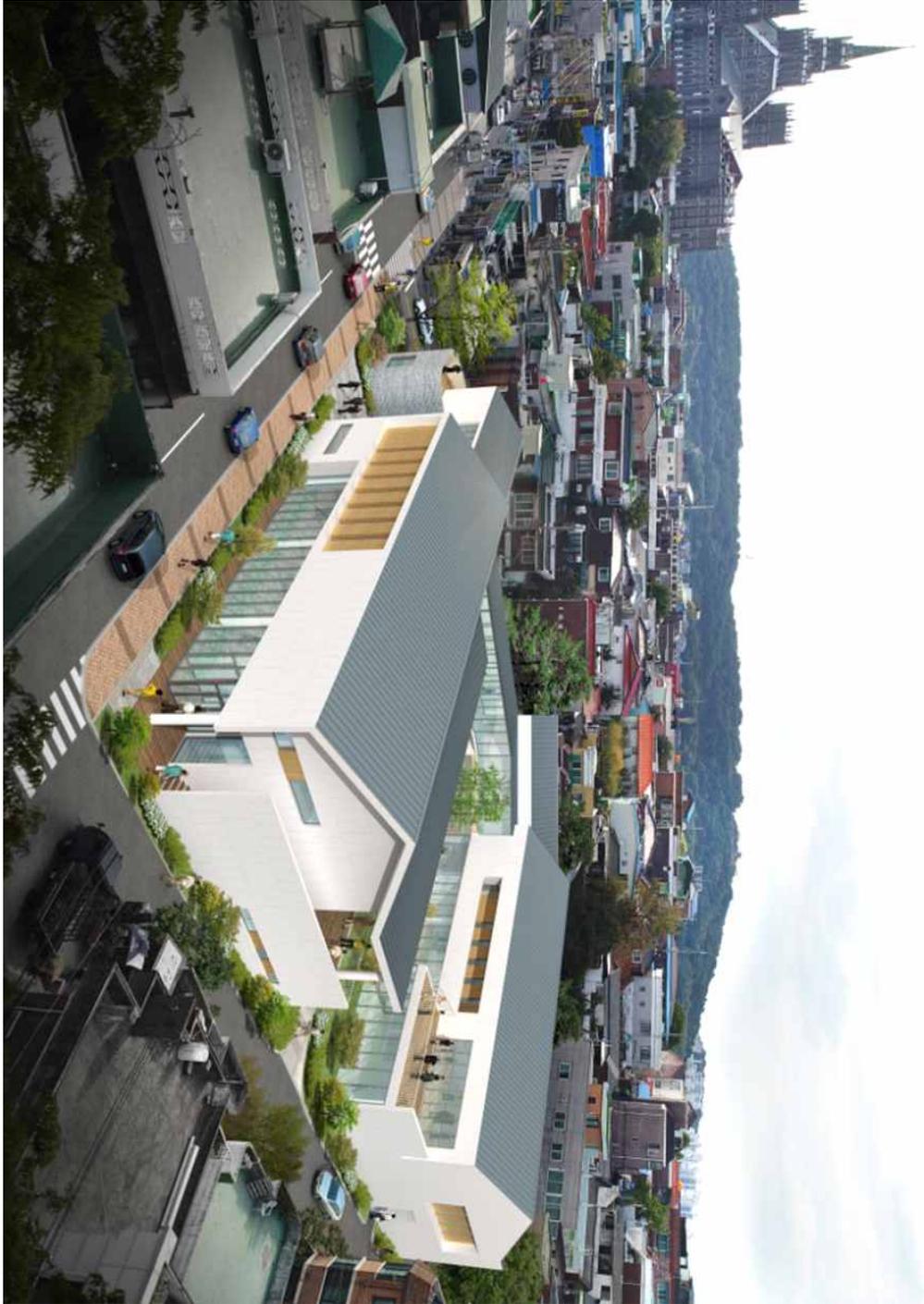
□ 계획설계안

■ 조감도 1



□ 계획설계안

■ 조감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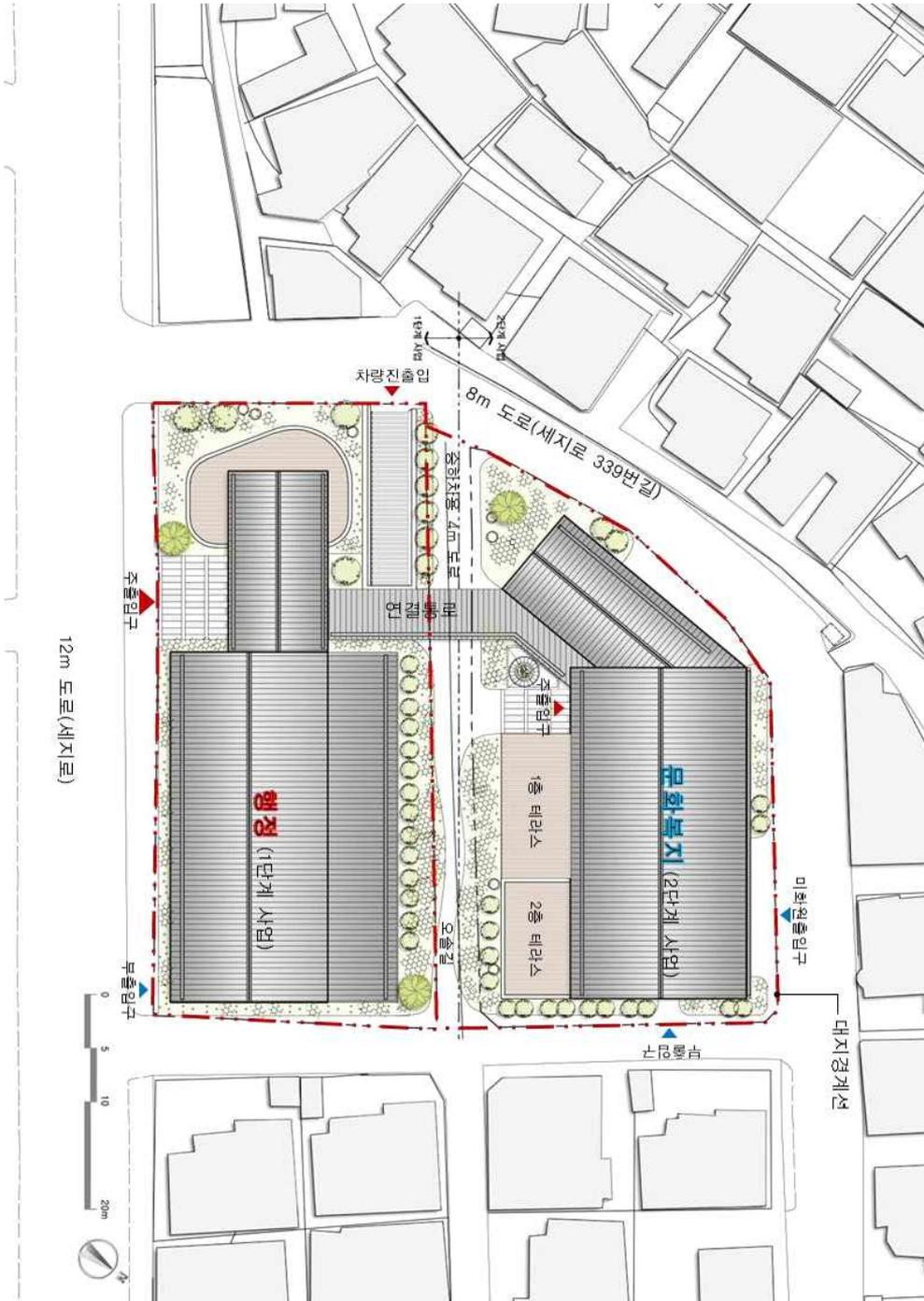
□ 계획설계안

■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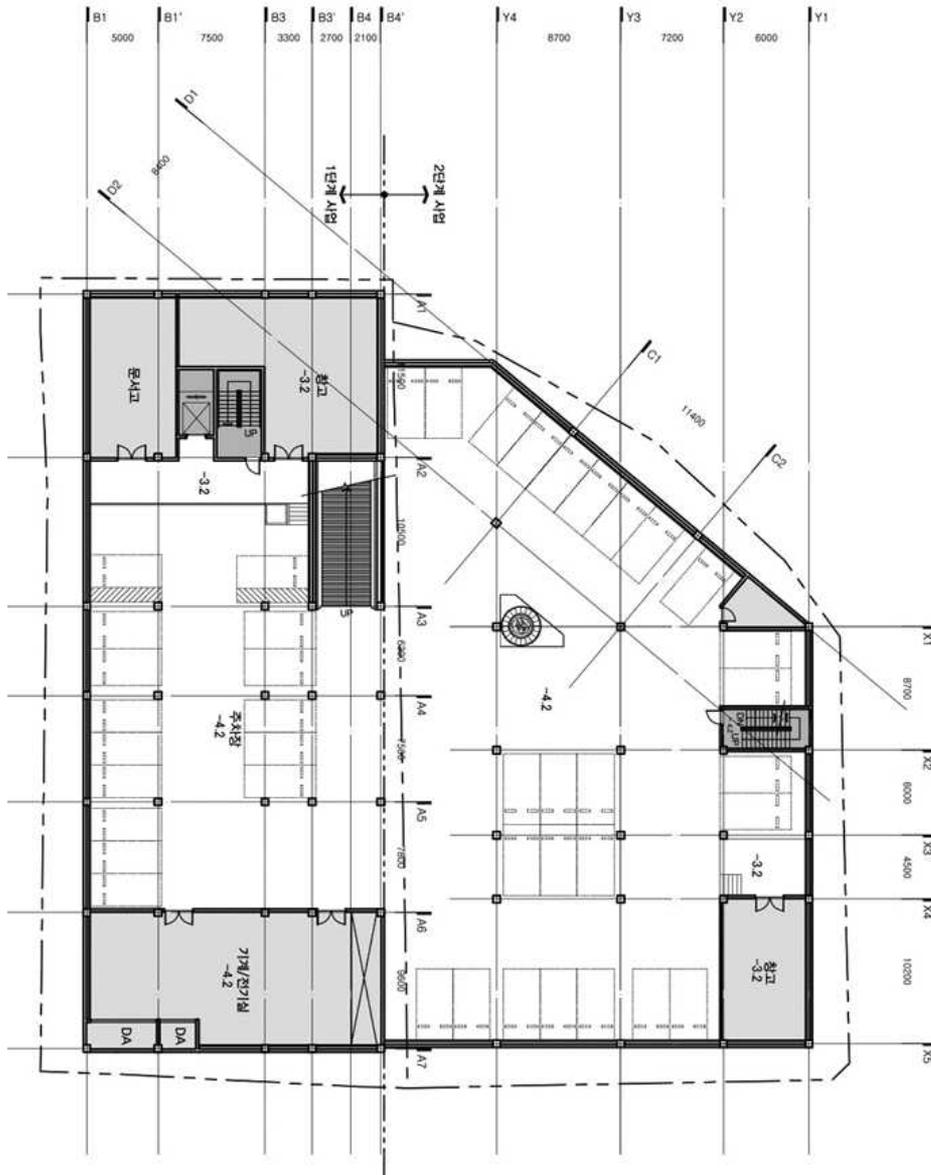
□ 계획설계안

■ 배치도



□ 평면도

- 지하 1층, Scale(A4) :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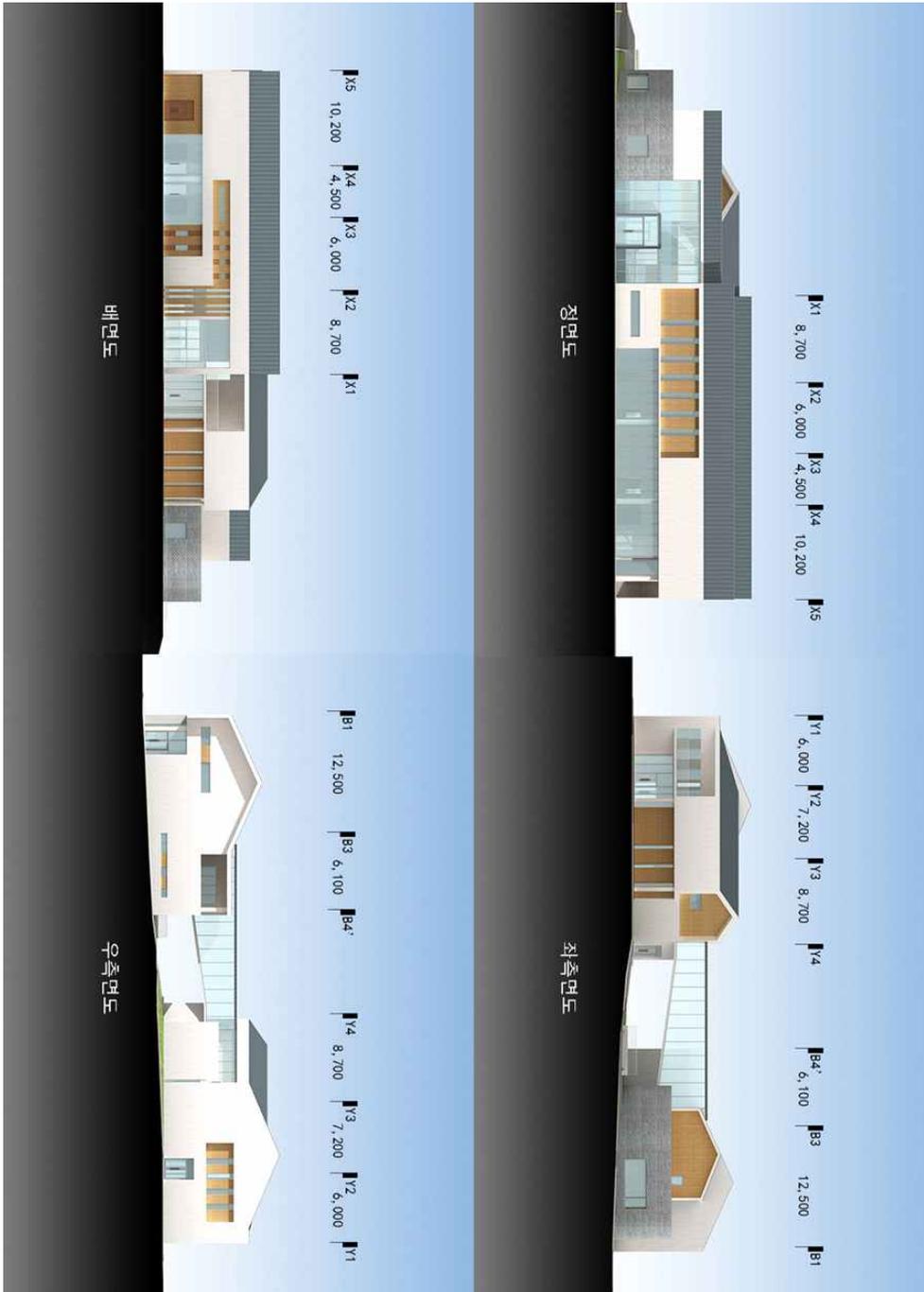


□ 평면도

- 지상 1층, Scale(A4) : 1/400



□ 입면도



□ 설계공모 지침서



– 지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
인권친화적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2018. 00.



인권센터

목 차

I. 건축 설계공모 개요	1
1. 건축 설계공모 목적	1
2. 사업 개요	1
II. 건축 설계공모 요강	2
1. 설계공모 방법	2
2. 설계공모 일정	3
3. 참가등록	3
4. 현장설명회	4
5. 질의 및 응답	4
6. 작품제출	5
7. 작품심사	5
8.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소유권	6
9. 기 타	6
III. 건축설계 지침	7
1. 계획의 기본방향	7
2. 인권을 반영한 청사 계획	7
3. 대지면적 및 주요시설 배치(안)	8
4. 설계 시 고려사항	10
IV. 도서 작성 및 제출	11
1. 제출도서의 종류	11
2. 작성방법	11
3. 제출도서의 익명성	13
4. 제출방법	13
V. 심사 및 입상작 선정	14
1. 작품심사	14
2. 심사방법	15
3. 특기사항	18
VII. 각종서식	19

I 건축 설계공모 개요

1. 건축 설계공모 목적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노인과 외국인 비율이 높으며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해 안전하지 못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청사를 건립하고자 한다. 특히 본 청사는 이동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다양한 주민들의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사업개요

가.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39동 8필지(지동)

나. 대지면적 : 1,457㎡

다. 공모대상 시설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475㎡(전체연면적 5% 범위 내 조정가능)
- 용 도 : 공공업무시설

라. 추정 공사비 : 7,392백만원 (부가세포함)

마. 추정 설계비 : 7,392백만원 x 5.15% (부가세포함)

바. 과업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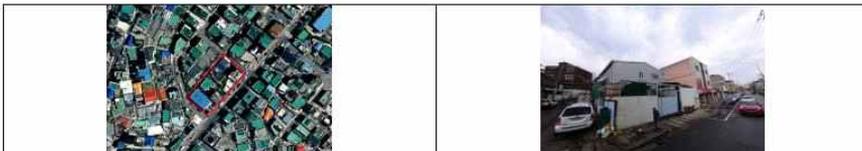
- 인권을 반영한 청사계획 : 지역 주민과 시설 이용자, 직원 및 그 밖의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않고, 인권이 존중·보호되는 청사를 계획
- 지동행정복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포함)
- 신재생에너지설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VE(기술자문 포함) 및 계약심사, 폐기물처리용역, 유니버설디자인협의, 건축협의 등 기타 발주처가 필요시 요구하는 각종자료에 대한 용역비 포함.

사.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공휴일 포함)

아. 발주기관 : 수원시

- 담당자 : 000 (Tel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00구

자. 부지 위치도(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II 건축 설계공모 요강

1. 설계공모 방법

가. 공모방식 : 국내 일반설계공모

- 1) 수원시 관내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는 수원시 건축사와 공동 응모 (권장)
- 2) 공동응모자의 경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나. 참가자격

-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 소지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 관계 법령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일까지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 3)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설계업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한다.
 - (1)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을 필한 자)
 - (2) 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 (3)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 (4)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을 때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하였거나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4) 공모 응모 신청서를 제출 및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로 제한하며 참가하지 않은 제안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다.

2. 설계공모 일정

가. 공모일정

구 분	공 모 일 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18. 00. 00(0요일)	나라장터, 수원시청홈페이지 공고
현장설명회 개최	2018. 00. 00(0요일)	0000
참 가 등 록	2018. 00. 00(0요일)	0000
결 의 접 수	2018. 00. 00 ~ 00. 00	0000@korea.kr
결 의 회 신	2018. 00. 00(0요일)	수원시청홈페이지 공고
작 품 접 수	2018. 00. 00(0요일)	방문접수(0000)
작 품 심 사	작품 접수 후 7일 이내(변경될 수 있음)	수원시청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수원시청홈페이지 공고
도 서 반 환	결과 발표 후 7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함.

3. 참가등록

가.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FAX 접수 불가)

나. 일 시 : 2018. 00. 00(0요일) 00:00 ~ 00:00

라. 신청시 구비서류

- 1) 응모 신청서<서식1> 1부
- 2) 청렴서약서 <서식2> 1부
- 3)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4)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 5)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시, 대표자 선임계, 공동응모협정서 <서식3, 서식4> 1부
- 6)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서식6> 1부
- 7) 동의서 <서식7> 1부

4. 현장설명회

가. 장 소 : 0000

나. 일 시 : 2018. 00. 00(0요일) 00:00 ~ 00:00

다. 참석대상 :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라. 내 용

- 1) 설계공모지침의 주요내용
- 2) 현지 대지조건 설명 및 현장 확인(답사) 등

※ 현장설명회 참석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설계대상 관련 시설 등을 안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참여하시기 바람

5. 질의 및 응답

가. 제출방법

-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 제공 서류류, 기타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질의서 <서식5>로 작성한 질의서를 E-mail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질의접수일 : 2018. 00. 00(0요일) ~ 00. 00(0요일) 00:00

다. 질의접수처 : 000@korea.kr

라. 유의사항

- 1) 질의서 발송 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수원시청 00과, 031-000-0000 000)하여야 하며, 오류 및 미확인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한다.
-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마. 질의 답변

1) 일 시 : 2018. 10. 26(금)

2) 방 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공고/고시에 게재

3)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제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작품 제출

가. 제출일시 : 2018.00. 00(0요일) 00:00~00:30

나. 제출장소 : 000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이외의 서류류 제출은 불가

라. 제출서류

- 1) 건축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 <서식8> 1부
- 2) 설계설명서 <서식13> 12부
- 3) 설제도면 <서식14,15> 12부
- 4) 위 2), 3) 내용을 저장한 CD 2매 ※ 저장형식 : PDF

7. 작품심사

가. 설계공모 작품 심사

- 1) 일 시 : 작품 접수 후 7일 이내
- 2) 장 소 : 수원시청
- 3) 심사방법 : 심사는 서면심사로 진행
- 4) 심사위원 명단은 추후 공지

나. 심사결과 발표

○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공고/고시에 게재

다. 입상작 선정 및 시상

- 1)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 2) 입상작 보상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최우수작(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기타입상작 : 전체보상금 1,500만원
 - 우수작(1점) : 900만원 (실적을 제외한 응모작품수가 3개 이상시)
 - 가 작(1점) : 600만원 (실적을 제외한 응모작품수가 6개 이상시)
- ※ 입선작에 대한 보상은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3)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소유권

- 가. 제출된 공모안의 저작권에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당선작 외의 공모안에 대해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 다.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발주자가 이용상 편익증진 및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외관을 포함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9. 기타

- 가.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 나.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다.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Ⅲ. 건축설계 지침

1. 계획의 기본방향

- 가. 외부 공간 및 건축물의 형태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하며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 나.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원시 색채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지역정체성 확보와 지역 환경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다. 유니버설디자인 및 경기도 동주민센터 민원실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등을 준용하여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주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 라.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공간구성을 고려하며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마. 기능, 구조, 공간구성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설계하되, 향후 유지관리비(열손실, 전력손실 등)가 저렴하도록 계획한다.
-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준수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이상으로 계획한다.
※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설비는 건물의 형태와 조화롭게 설치한다.
- 사.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행정복지센터(민원실, 북카페, 레크레이션, 동대본부 등)로서 유지관리 주체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각 실의 조닝(Zoning) 방법 및 보안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아. 단계별 사업의 연계성 고려
본 사업은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되며 1단계 사업은 본 설계공모에 해당하는 세지로 339 외 8필지(지동)이고, 추후 진행될 2단계사업은 세지로 339번길 6-1 외 7필지(지동)이다. 이에 따라 단계별 사업이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의 규모를 제시하여 매스 수준의 최종 형태를 계획의 범주에 포함한다.



2. 인권을 반영한 청사 계획

가. 인권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건축설계 수립

- 건축의 기획·준비·설계·시공·이용·사후 관리 등 건축의 전 과정에서 인권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건축설계를 한다.
- 지역 주민과 시설 이용자, 직원(근무자) 및 그 밖의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청사를 이용함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 존중·보장받을 수 있는 청사로 계획한다

나. 주민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다. 청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시설이용권을 보장되도록 계획

일조·조망 등 최적의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권 보장

-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공간을 도입한다.
- 이용자 요구에 대응하는 편의공간 계획시 참여권, 소통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직원(근무자)들의 업무 편의성과 복지(휴식권 보장 등)를 고려한 공간 계획

바. 사회적 약자 및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계획

- 장애인·노인·아동·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청사를 계획한다(접근권, 이동권, 안전권-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성의 모성보호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청사를 계획한다(수유실, 임산부 요가교실 등)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가 신체적·경제적·문화적인 차별 없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청사를 계획한다(장애인 화장실, 각종 프로그램 등)
- 한부모·다문화 가족을 위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청사로 계획한다(상담실, 다문화프로그램, 다문화 행사 개최-세계음식, 외국어 안내표지판 등).

사. 인권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계획

향후 인권수요의 변화 및 증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복합청사를 계획한다.

아.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 계획

지역주민의 범죄 및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범죄예방(CPTED)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발생을 줄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자. 지동 현황분석 및 설문조사, 대면조사 결과를 고려한 계획

주민 설문 및 대면조사 결과표를 참조하여 계획한다.

3. 대지면적 및 주요시설 배치(안)

가. 부지위치 :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39외 8필지(지동)

나. 부지면적 : 약 1,457m²

다. 건축규모

- 1)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475m² 내외
- 2) 각 층별 주요 프로그램 배치 안

구 분	용 도	면적 (m ²)
지상 2층 (650m ²)	회의실	71.00
	휴게실	27.00
	예비군중대	28.00
	중대장실	15.00
	예비군중대 창고	32.00
	대회의실	240.00
	공용공간 (홀,엘리베이터,계단실,복도,화장실)	237.00
	소계	650.00
지상 1층	복지상담실	24.00
	전자통신실	24.00
	민원실	315.00
	민원실서고	50.00
	문서고	60.00
	당직/휴게실	25.00
	동장실	30.00
	유아놀이방+수유실	88.00
	공용공간 (홀,엘리베이터,계단실,방통실, 화장실)	195.00
	소계	811.00
	지하 1층	창고
기계전기실		160.00
문서고		74.00
주차장		608.00
공용공간 (엘리베이터,계단실,DA)		45.00
소계		1014.00
면적 계	※ 실별 소요면적은 예시사항으로서 ±10% 미만 범위에서 조정 가능	2,475.00

※ 실별 면적은 법적 허용 규모 내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 가능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단
층수는 제시된 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위반 시 감점)

※ 주민 및 지동청사 직원의 의견 수렴, 현장조사 등에 근거한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모든 영역에 대해 세부 면적, 층별 위치, 배치, 공간조직 및 구성 등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 보호, 충족할 수 있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제안하여 계획한다.(주민 설문조사 분석결과 참고)

- ※ 다만, 각 공간에서 다음의 시설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 교육권 보장공간 : 자치회관(강의실) (예시)
 - 문화권 보장공간 : 다원누리홀, 카드실, 새마을문고, 서고, 북카페, 프로그램실 (예시)
 - 소통 및 참여권 보장공간 : 민원실, 자치회관(대회의실, 소회의실), 동장실
 - 휴식권 보장공간 : 이용자 휴게실, 미화원 탈의실, 샤워실
 - 안전권, 접근권 보장공간 :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옥외공간, 옥상
 - 환경권 보장공간 : 조경, 화장실, 창문, 자재 등 시각적 공간
 - 프라이버시권, 정보접근권 보장공간 : 상담실
- ※ 지역주민 및 시설이용자를 위한 공간 (교육·문화권 보장공간)은 설계자 제안가능

- ※ 지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시, 요구사항
 - 형태: 수원화성과 어울리게 한옥느낌이 나도록 계획, 평지붕보다 박공지붕 선
 - 야외공간: 야외 행사 가능하도록 계획
 - 대강당: 200여명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며 가변형 벽체 설치, 같은 층에 주방 조리실 설치
 - 각종 프로그램실 : 주말과 저녁에 이용 가능하도록 행정공간과 별도의 동선으로 분리
 - 청소년,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독서실 조성
 - 화장실: 외부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

- ※ 지동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시, 요구사항
 - 민원실 가까이 서류보관창고 조성
 - 동장실은 민원인과 차폐된 독립공간에 위치
 - 대회의실은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
 - 사회복지시설상담실은 민원실에 면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계획(프라이버시 확보)
 - 환경미화원의 공간은 별도의 공간으로 동선분리
 - 지하주차장에 수하물 상하차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엘리베이터를 인접하여 배치
 - 중대본부에는 예비군 물품창고가 필요
 - 각종 제설장비 보관 가능한 공간 확보

4. 설계 시 고려사항

가. 평면계획

- 1) 각 층의 용도별 구획 여부와 구획의 방법, 각 용도별 면적은 전체 연면적, 층수제한의 범위에서 설계자가 합리적·창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추후 실시설계 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부분적인 면적 조정 및 지역주민·시설이용자의 의견수렴 후 용도 결정)
- 2) 공용면적은 이용자 및 관리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 3)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한다.
- 4) 전기실, 기계실 등은 해당용도 및 관련법규에 타당하도록 계획한다.

나. 입면계획

- 1)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 2) 전체적으로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서 경제성과 안정감 있는 입면과 자연채광 및 환기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3) 주변 수원성곽과 조화로운 디자인과 중경에서 바라볼 때의 풍경을 고려하여 박공지붕 등을 지향하여 다양한 형태로 입면을 계획한다.
- 4)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하거나 과도한 입면디자인은 지양한다.

다. 동선계획

- 1) 건축물 전체의 동선계획은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용이한 동선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 2) 시설 내 진출입의 편의성, 접근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특기사항

- 1) 공모 안은 발주기관 요구 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2) 관련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주차장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수원시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주차장조례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 3)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진재해대책법 및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 4) 조명계획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의거 계획한다.
- 5) 인권을 반영한 청사 건립을 위해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IV. 도서작성 및 제출

1. 제출도서의 종류

- 가. 설계설명서
- 나. 설계도면

2. 작성방법

가. 공통사항

- 1) 건축물의 배치도에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기한다.
- 2)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 3)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을 사용. 다만,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한다.
- 4) 도면중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의 축척은 임의로 하되 제출도서의 규격을 고려하여 가독성이 높은 축척으로 작성한다.
- 5)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용지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표현은 흑백색만 사용 가능하며 색채 사용불가(검정색음영비율에 따른 명도조절은 가능함). 다만, 조감도, 설계설명서의 설계개념설명은 컬러 사용이 가능하다.
- 6)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상의 각 실의 명칭 등은 서로 동일하게 한다.

나. 제출도서 내용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의 기본내용은 아래에서 제시한 바를 따른다.

구 분	내용 및 순서		비고	쪽수
설계도면	1	표지	-	1
	2	목차	-	1
	3	사업개요	기본사항	1
	4	조감도	조감도 1컷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컬러사용가능	1
	5	배치도	건축물, 도로, 주차장, 조경 등 주요계획 내용	1
		평면도	각층 평면도	6내외
		입면도	주요 입면 4면	2
		단면도	주요 부분 중평단면도	1

구 분	내용 및 순서		비고	쪽수
설계 설명서	1	표지	붙임서식 참조	1
	2	조감도	설계도면에 게재된 조감도 사용	1
	3	목차	페이지 기재	1
	4	사업개요	붙임서식 참조	1
	5	층별 실구성 및 면적표	산출근거 포함	1
	6	설계개념	설계안에 대한 개념 이미지 및 텍스트 등, 스터디모델 모형 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사용 가능	5내외
	7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10내외
	8	실내외 마감재료표	실내·외 주요 마감재료 표	1
	9	구조계획	주요 구조계획 개념도	1
	10	설비계획	주요 설비계획 개념도	1
	11	에너지절약계획	-	1
	12	조경, 주차 등 외부공간계획	-	1
	13	법규검토서	붙임서식 참조	1
	14	개략공사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로 구분 / 붙임서식 참조	1

2)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에서 제시한 바를 따른다.

구 분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용지크기	A3(형)	A4(중)
여 백	표지 및 속지 : 붙임서식 참조	표지 : 붙임서식 참조 속지 여백 : 상 25mm, 하 25mm , 좌·우 20mm
글자체	자 율	휴먼명조
글자크기	자 율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 내용 : 10포인트
도표, 이미지	자 율	자 율
출간격	자 율	160%
분 량	15이내	30이내
재 질	표 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 용지무게 : 180g/㎡
	본 문	- 1면 인쇄(조감도 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g/㎡
	간 지	- 1면 인쇄, 흑백 ※ 용지무게 : 80g/㎡
제본방법	A3(형) 좌철(무사무선철)	A4(중) 좌철(무사무선철)

3. 제출도서의 익명성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의 확보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전체 기간 동안 적용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설계 도판이나 설계설명서 등 각종 서류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응모자 임의의 고유번호도 표시하지 아니함)
- 나.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전 기간 동안 적용된다.
- 다. 상기사항을 위반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4. 제출방법

-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으며, 참가업체는 접수 기간 내에 업체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수원시청 시설공사과에 직접 제출한다.
- 나. 우리시에서 규정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접수받지 않는다.
- 다. 기 타
 -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는 훼손,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제출한다.
 - 제출된 작품에 대하여 추가하여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 작품접수 시에는 참가작품 접수증을 교부한다.

V. 심사 및 입상작 선정

1. 작품심사

가. 심사위원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구성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당선자를 선정한다.

나.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수원시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며 추후 명단 공지한다. 심사위원 1인은 인권관련 전문가나 유사용역 수행 경험자로 한다.

다. 심사위원회 운영

-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 2) 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기밀유지

- 1)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 2)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

등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되나 녹음·녹화·녹취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보존한다.
- 4)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 결과 발표시까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 3)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심사방법

가. 평가기준

- 1)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3) 발주기관 등(발주기관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 4)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 5)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건축계획의 인권계획도입 10점, 독창성 60점, 건축계획의 기술성 및 경제성을 30점으로 정한다.
- 6) 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감점한다.
- 7)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이상일 때는 위원회의 표결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차점자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보상금의 평균금액으로 지급한다.
- 8)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세부배점기준										
계	100												
인권개념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계획의 인권개념 도입 • 주변 환경과의 관계, 주민의 자율적 참여보장, 인권취약계층을 고려한 공간계획 • 공간, 형태 등의 인권친화적 계획 	<table border="1"> <tr><td>A</td><td>B</td><td>C</td><td>D</td><td>E</td></tr> <tr><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able>	A	B	C	D	E	10	9	8	7	6
A	B	C	D	E									
10	9	8	7	6									
건축계획의 작품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계획의 독창성 • 부지여건, 시설용도에 맞는 창의적 배치 및 외관 • 공공건축물로서 품격 	<table border="1"> <tr><td>A</td><td>B</td><td>C</td><td>D</td><td>E</td></tr> <tr><td>20</td><td>17</td><td>14</td><td>11</td><td>8</td></tr> </table>	A	B	C	D	E	20	17	14	11	8
	A	B	C	D	E								
	20	17	14	11	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계획의 기능성 • 효율적인 부지활용 및 동선 • 합리적 평면 및 단면 계획 • 단계별 계획의 연계성 및 확장 가능성 	<table border="1"> <tr><td>A</td><td>B</td><td>C</td><td>D</td><td>E</td></tr> <tr><td>20</td><td>17</td><td>14</td><td>11</td><td>8</td></tr> </table>	A	B	C	D	E	20	17	14	11	8
A	B	C	D	E									
20	17	14	11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과 조화 • 주변 시설물과 어울리는 색채 및 재료 •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 	<table border="1"> <tr><td>A</td><td>B</td><td>C</td><td>D</td><td>E</td></tr> <tr><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able>	A	B	C	D	E	10	9	8	7	6	
A	B	C	D	E									
10	9	8	7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관리의 효율성, 경제성 •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간구성 • 에너지효율 및 환경친화적 재료 	<table border="1"> <tr><td>A</td><td>B</td><td>C</td><td>D</td><td>E</td></tr> <tr><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able>	A	B	C	D	E	10	9	8	7	6	
A	B	C	D	E									
10	9	8	7	6									
건축계획의 기술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설비계획의 우수성 • 경제적·합리적 구조 • 설비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table border="1"> <tr><td>A</td><td>B</td><td>C</td><td>D</td><td>E</td></tr> <tr><td>20</td><td>17</td><td>14</td><td>11</td><td>8</td></tr> </table>	A	B	C	D	E	20	17	14	11	8
	A	B	C	D	E								
20	17	14	11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공법 및 비용 • 주변을 고려한 공사 방향 • 적정 공사비 	<table border="1"> <tr><td>A</td><td>B</td><td>C</td><td>D</td><td>E</td></tr> <tr><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able>	A	B	C	D	E	10	9	8	7	6	
A	B	C	D	E									
10	9	8	7	6									
감 점	()	○ 감점처리대상 라. 2) 참조											

※ 1)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을 별도로 정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심사한다.

2) 인권개념 도입과 관련한 평가항목은 「III 건축설계지침 2. 인권을 반영한 청사계획」의 내용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나. 당선업체 선정

1) 당선업체는 평가점수를 최고득점자로 결정한다.

다. 실적기준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제출도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2)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번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등

- 3)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 4)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5)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 6)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 7) 응모안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8)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9) 다른 공모에 제출된 작품을 재 출품한 경우
-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라. 불이익 처분 및 방법

- 1)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 2)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위반내용	실격 및 감점기준	감점한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심사 전에 심사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 기타 실격 해당 사항 	실격(심사제외)		
• 설계공모 작성일반사항	0.2점/ 항목당	2점	
• 설계공모 도면 및 설계설명서 구성	0.2점/쪽당	2점	
•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0.2점/ 항목당	2점	
• 제출부수 부족 시	0.2점/부당	2점	

마. 심사결과 발표 및 공모안 반환

1) 심사 결과의 발표 및 공개

- 심사결과를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를 서면이나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공개함, 다만,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
-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공모안 반환

- 입상작(당선작, 그 밖의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는다.
-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 하고, 기간 안에 반환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임의 처리하며, 응모자는 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특기사항

- 가. 모든 증빙자료는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부서의 결정에 따르되 서로 협의하여 체결한다.
- 다.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등 설계업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한다.
- 라. 당선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과업 이행 요청시는 이를 수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마.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용역수행 시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부득이 교체할 경우 자격, 경력 이 당초 참여예정자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 바. 당선발표 이후라도 설계공모 참가자의 자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실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실격처리 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 작품제출자와 발주처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bstract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Plan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ll human beings can have equal, non-discriminatory human rights. Human rights should not only be guaranteed socially, but also be sufficiently guaranteed in the physical space in which humans are active. Especially, public buildings are the most open place for all, and should be the place where the human rights of building users are guaranteed.

‘Suwon City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Article 8.’ states that “When a market determines that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citizen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or enforcing policies, it should carry out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ince public building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local residents and users, they should be considered as subjects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Therefore, “2018 Guideline in Planning Stage of the Public Building for Human Rights in Suwon City” was developed.

For this, three prior studies were analyzed. First, Theoretical discussion and prior research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were analyze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developed by United Nations,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were analyzed and the steps for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were derived. Second, we analyzed the theoretical concept of the Public Building for Human Rights and the cases of Anam-dong, Seongbuk-gu, the first Public Building for Human Rights in Korea. Third, we analyzed the precedent researches related to the planning stage in public buildings and applied them to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the Public Building for Human Rights.

In order to develop guidelines for practical use, the pilot project was selected as

a new project for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n Ji-dong, Paldal-gu, Suwon, a vulnerable area for human rights. The researchers participated in the planning stage as architects. The role of architects is to gather opinions from building users and draw out plans. Also, discus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with the T/F team, review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Council, and draw out the final plan revised and supplemented.

The final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Ji-dong Administration Welfare Center includes contents similar to the basic design such as bird's-eye view, floor plan, cost, and etc. Through procedures, the Design Competition Guidelines were prepared to enable human rights-friendly design, and the project plan was drafted with the final proposal to carry out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Through the pilot project, the planning steps which were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the Public Building for Human Rights and developed guidelines based on them. The guideline was divided into the business basic planning stage, the business planning stage,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stage. Building users and architects·human rights specialists can participate with business and construction departments from the basics of business. At the stage of establishing the business plan, the experts drafted the proposal based on the opinions of the building users and made a final plan through consultation several times. Based on the contents collected by conferences, the guidelines of design competition were prepared to complete the project so that the human rights consideration could be designed. The guideline includes a step-by-step checklist and an administrative procedure, so that the tasks, meetings, and participants to be developed should be clearly specified so that they are not difficult to apply.

In order to guarantee Suwon citizens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and to spread the Public Building for Human Rights, building users and architects·human rights specialists need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stage of public buildings, and especially the help of architects is essential. To this end, Suwon City should build a pool of experts in architects and human rights who have sufficient competence and organize the work cost of experts in advance.

Keyword : Human Rights, Public Building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Planning Stage, Guideline

| 저자 약력 |

안국진

동경대 건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공공디자인센터 센터장(현)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근무

나이토희로시건축설계사무소 근무

E-mail : ahn@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2018, 수원시정연구원)

「우화관 복원에 따른 근대건축자산 존치여부에 관한 연구」 (2018, 수원시정연구원)

「일제강점기 수원 권업모범장 건축술에 관한 연구」 (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농림학교 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2016, 수원시정연구원)

「수원 권업모범장 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2015, 수원시정연구원)

